

성과감사

# 감 사 보 고 서

-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

2021. 7.

감 사 원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II. 감사대상업무 현황 .....	3
III. 감사결과 .....	10
1. 감사결과 총괄 .....	10
2.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	12
가. 범죄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 분야 .....	12
1)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업무 처리 부적정 .....	17
2) 벌금형 선고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의 일관성 미흡 .....	23
3)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체불임금 수령 지원 필요 .....	27
4)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지연 .....	31
5)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제재업무 부당 처리 .....	35
나. 세금 체납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 분야 .....	45
1)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업무 처리 부적정 .....	48
2)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 등 처리 부적정 .....	53
다. 출국 외국인 등 보유 차량 관리 분야 .....	60
1) 완전출국 외국인 등 명의 차량에 대한 관리 부적정 .....	62
[별표] .....	71

## 표 목차

[표 1]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2019년) .....	4
[표 2]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019년) .....	5
[표 3]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2015~2019년) .....	5
[표 4] 자진출국 외국인 현황(2015~2019년) .....	6
[표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현황(2019년) .....	7
[표 6] 조세 부과 주체 및 주요 세목 현황 .....	8
[표 7] 외국인에 대한 조세 부과 현황(2015~2019년) .....	8
[표 8] 외국인에 대한 내국세 세목별 부과 현황(2019년) .....	9
[표 9] 국내 자동차 등록 현황(2015~2019년) .....	9
[표 10] 대포차 검거 현황(2015~2019년 8월) .....	9
[표 11] 분야별·기관별 지적사항 .....	10
[표 12] 외국인에 대한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현황(2020년 10월 말) .....	12
[표 13]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제도 현황 .....	13
[표 14] 외국인 범죄 현황(2019년) .....	14
[표 15] 범죄행위로 처벌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및 입국금지 기준 .....	15
[표 16] 지명수배 이후 출국한 외국인의 범죄 혐의 현황(2020년 10월 말) .....	19
[표 17]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외국인에 대한 조치 현황(2018~2019년) .....	25
[표 18] 성범죄(강제추행)로 벌금형이 선고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미이행 사례 ..	26
[표 19] 체불임금 관련 진정사건 처리 실적(2016년~2020년 10월) .....	29
[표 20]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체불임금 회수 방법 현황 .....	30
[표 21] 외국인의 세금 체납 현황(2020년 10월 말) .....	45
[표 22] 내국세 세목별 외국인 체납 현황(2020년 10월 말) .....	45
[표 23]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업무 흐름 .....	46
[표 24] 국세를 체납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현황(2018~2020년 11월) .....	51
[표 25]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 기준 .....	54
[표 26]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추출 자료 처리 현황(2020년 10월 말) .....	57
[표 27]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현황(2020년 10월 말) .....	65

[표 28]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의 과태료·범칙금 미납 현황(2020년 10월 말) … 66

[표 29]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 현황(2020년 10월 말) … 66

[표 30] 동일한 외국인 명의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등록된 현황(2020년 10월 말) … 68

## 그림 목차

[그림 1] 출국조치 등 심사결정 및 입국규제 과정 …… 36

[그림 2] 외국인 체류허가 시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절차도 …… 49

## 도표 목차

[도표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2015~2019년) …… 3

[도표 2]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015~2019년) …… 4

[도표 3]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2015~2019년) …… 6

[도표 4] 범죄 종류별 외국인 범죄 건수(2015~2019년) …… 7

## 별표 목차

[별표 1] 고액 국세 체납 외국인의 국외 체류일수 현황 …… 71

[별표 2]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신규등록된 자동차 등 현황(2020년 10월 말) …… 72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배경 및 목적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2015년 190만 명에서 2019년 252만 명으로 32.6% 증가하였으며 국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3.7%에서 2019년 4.9%로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의 외국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등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국내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자본을 투자하는 등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외국인 범죄와 세금 체납 등과 같은 범질서 위반행위가 늘어나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범질서 위반 외국인 중 주요 범죄자에 대하여 출국을 명하거나 입국을 금지하고, 도주한 범죄자나 고액의 세금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하거나 국내 체류기간을 제한하며, 외국인 명의 대포차<sup>1)</sup>에 대해서는 운행을 정지하는 등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이와 같은 출입국 등 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범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소유자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 명의 자동차를 운행하여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를 의미함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외국인 범죄자 및 세금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의 적정성, 외국인 명의 대포차 단속대책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출입국 관련 법령,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기존 감사결과, 각종 연구 보고서 등의 자료와 대상 기관에서 수행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련 업무 현황과 실태 등을 사전 분석하여 감사범위와 중점점검 대상을 선정한 후 2020. 11. 30.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15일간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질문·답변과정을 거쳐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1. 6. 24.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대상업무 현황2)

### 1. 외국인 국내 체류 현황

#### 가. 체류 외국인 현황

최근 5년간(2015~2019년) 세계화·개방화 및 입국 문호 확대 정책 등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은 [도표 1]과 같이 190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국내 총인구 중 체류 외국인의 비중도 3.7%에서 4.9%로 증가하였는데,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는 장기사증 보유자(장기체류자)가 147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17.7%(26만 명) 증가한 반면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단기사증 보유자(단기체류자)는 43만 명에서 79만 명으로 83.7%(36만 명) 늘어 단기사증 보유 외국인의 증가가 체류 외국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도표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2015~2019년)



자료: 법무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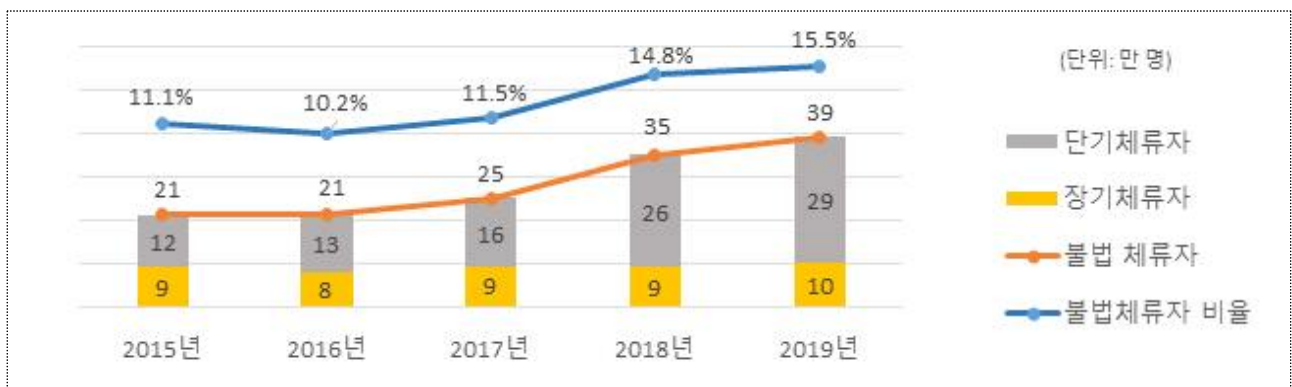
#### 나.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그리고 체류기간을 초과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도 [도표 2]와 같이 2015년 21만 명에서 2019년 39만 명으로 85.7%(18만 명)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불법체

2)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를 통해 검증한 내용이 아님. 'III. 감사결과'에서 3개 분야별 도입부의 '실태'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음

류율(총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율)도 2015년 11.1%에서 2019년 15.5%로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불법체류자 중 장기체류자는 매년 8~10만 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단기체류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2018년에만 약 10만 명이 늘어나는 등 2015년 12만 명에서 2019년 29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도표 2]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015~2019년)



자료: 법무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 재구성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이 2019년 말 기준 사증면제 국가인 태국 15만여 명, 베트남 5만여 명, 몽골 1만여 명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에 따른 중국인 입국자 증가 등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도 7만여 명에 달하고 있었으며, 위 4개 국가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76.7%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2019년)

계 (비율)	태국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러시아	기타
390,281 (100.0)	152,439 (39.1)	70,536 (18.1)	58,686 (15.0)	17,510 (4.5)	13,095 (3.3)	12,090 (3.1)	65,925 (16.9)

자료: 법무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 재구성

그리고 체류자격별로는 [표 2]와 같이 사증면제(B-1) 17만여 명, 단기방문(C-3) 8만여 명, 비전문취업(E-9) 4만여 명, 관광통과(B-2) 3만여 명 순으로 많았다.



[표 2]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019년)

(단위: 명)

계	사증면제(B-1) <sup>1)</sup>	단기방문(C-3) <sup>2)</sup>	비전문취업(E-9) <sup>3)</sup>	관광통과(B-2) <sup>4)</sup>	기타
390,281	176,244	81,723	46,122	30,272	55,920

- 주: 1. '사증면제(B-1)'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경우 부여  
 2. '단기방문(C-3)'은 관광 또는 업무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에 체류하려는 자에게 부여  
 3. '비전문취업(E-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여  
 4. '관광통과(B-2)'는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에게 부여

자료: 법무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 재구성

#### 다. 출입국사범 현황

한편, 외국인이 불법체류하거나 불법취업하는 등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사범으로 분류되어 강제 출국되거나 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표 3]과 같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등의 증가에 따라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 등으로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3만여 명에서 4.3만여 명으로 40.5%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3.7만여 건에서 4만여 건으로 6.9% 늘어난 반면 부과된 범칙금·과태료 금액은 363억여 원에서 515억여 원으로 41.7% 상승하였다.

[표 3]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2015~2019년)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24,515	152,486	146,924	176,849	175,609
출국조치		30,675	38,312	36,342	39,854	43,096
범칙금·과태료 부과	건수	37,830	36,651	45,043	45,990	40,436
	금액	36,349	39,580	42,259	51,538	51,524
고발		1,850	2,553	2,851	3,482	4,552
처분면제 등 기타		54,160	74,970	62,688	87,523	87,525

자료: 법무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 재구성

또한 법무부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국조치와 함께 단속인력 한계 등의 사유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범칙금 감면 및 재입국

금지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자진출국 제도를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5년간(2015~2019년) [표 4]와 같이 매년 3~7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고 있다.

[표 4] 자진출국 외국인 현황(2015~2019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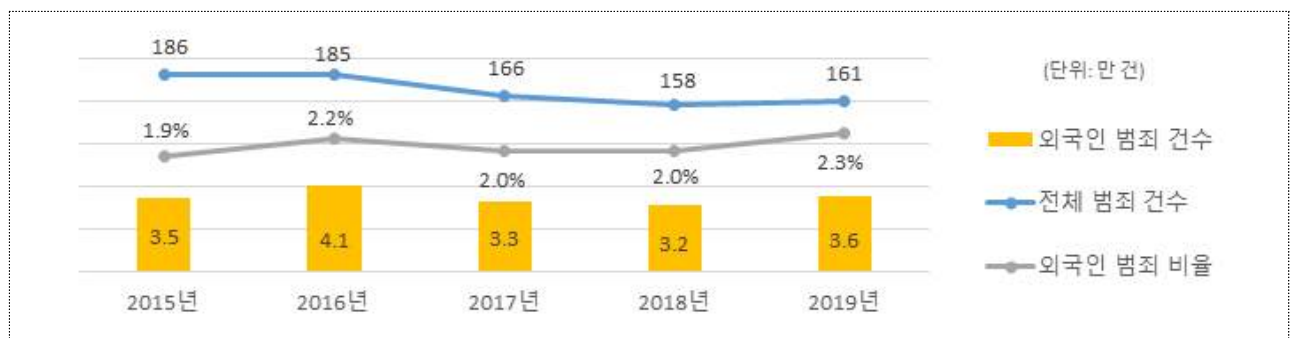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진출국	35,857	52,432	39,511	64,813	71,662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2. 외국인 범죄 현황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 죄는 [도표 3]과 같이 2015년 186만여 건에서 2019년 161만여 건으로 13.4%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범 죄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었지만 2015년 3.5만 건에서 2019년 3.6만 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범 죄 건수 대비 외국인 범 죄 건수도 2015년 1.9%에서 2019년 2.3%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도표 3]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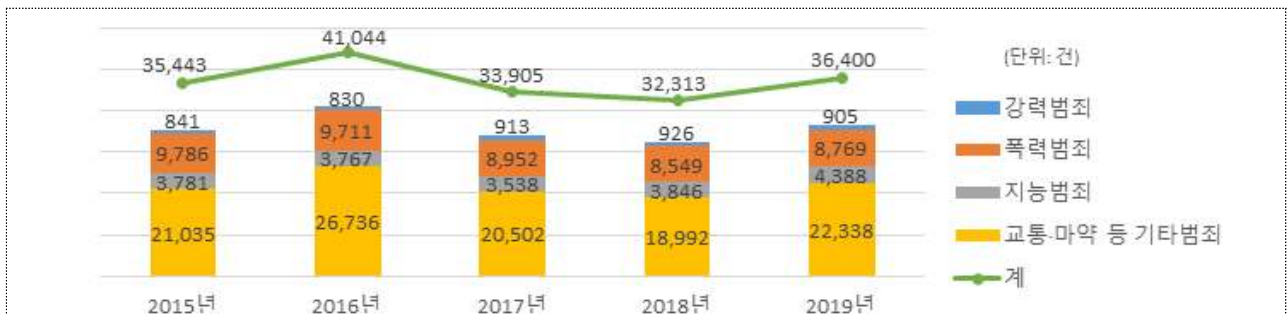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자료 재구성

외국인 범죄를 종류별로 보면, [도표 4]와 같이 폭행·상해 등의 폭력범죄는 2015년 9,786건에서 2019년 8,76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사기나 횡령과 같은 지능범죄는 2015년 3,781건에서 2019년 4,388건으로 16.1% 증가하였

고, 살인·강도·강간 등의 강력범죄도 2015년 841건에서 2019년 905건으로 7.6% 증가하였다.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최근 5년간(2015~2019년) 386건에서 1,027건으로 166.1%가 급증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598건에서 732건으로 22.4%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4] 범죄 종류별 외국인 범죄 건수(2015~2019년)



자료: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자료 재구성

그리고 [표 5]와 같이 2019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죄 외국인은 총 3,135명으로, 이 중 장기사증 보유자가 1,836명(58.6%)이고 단기사증 보유자는 1,299명(41.4%)으로 장기사증 보유자의 중범죄 비중이 높았으나, 체류 외국인 수와 비교하면 단기사증 보유자의 범죄율(0.16%)이 장기사증 보유자의 범죄율(0.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현황(2019년)

(단위: 명)

계	체류 외국인 수 (A)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수 (B)	범죄율 (B/A)
계	2,524,656	3,135	0.12%
장기사증 보유자	1,731,803	1,836	0.11%
단기사증 보유자	792,853	1,299	0.16%

자료: 법무부 및 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 3. 외국인에 대한 과세 및 차량 보유 현황

#### 가. 외국인에 대한 과세 현황

국세청 등 과세관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소득세·재산세·관세 등의 세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과세주체에 따라 [표 6]과 같이 내국세와 지방세, 관세 등으로 구분된다.

[표 6] 조세 부과 주체 및 주요 세목 현황

구분	내국세(국세청)	지방세(지방자치단체)	관세(관세청)
주요 세목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세, 자동차세 등	관세 등

2019년 기준 외국인<sup>3)</sup>에게 부과된 내국세 등 조세는 [표 7]과 같이 총 1조 872억여 원으로 내국세가 7,598억여 원, 지방세가 2,957억여 원, 관세는 315억여 원 규모이며, 최근 5년간(2015~2019년) 외국인에게 부과된 조세는 2015년 8,402억 원에서 2019년 1조 872억여 원으로 29.4% 증가하였고, 이 중 내국세가 60~70%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외국인에 대한 조세 부과 현황(2015~2019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840,233	787,084	821,158	977,128	1,087,201
내국세	579,303	522,152	514,442	641,018	759,875
지방세	231,956	246,324	282,060	306,576	295,768
관세	28,974	18,608	24,656	29,534	31,558

자료: 국세청·행정안전부·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19년에 외국인에게 부과된 내국세의 경우, [표 8]과 같이 종합소득세가 4,927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상속·증여세 1,659억여 원, 부가가치세 497억여 원, 양도소득세 339억여 원, 종합부동산세 174억여 원, 퇴직소득세 16백만 원 순이었다.

3) 외국법인·단체가 아닌 외국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의미함

[표 8] 외국인에 대한 내국세 세목별 부과 현황(2019년)

(단위: 백만 원)

계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759,875	492,755	33,901	16	165,992	17,438	49,773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외국인의 차량 보유 현황 등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표 9]와 같이 2015년 2,099만 대에서 2019년 2,368만 대로 매년 2~4% 증가하였고,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총 2,425만 대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21만여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0.9% 수준이다.

[표 9] 국내 자동차 등록 현황(2015~2019년)

(단위: 만 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록 대수	2,099	2,180	2,253	2,320	2,368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통계자료 재구성

그리고 불법체류 또는 완전출국<sup>4)</sup>하거나 사망한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의 발각 우려 또는 명의 이전의 번거로움 등의 사유로 차량 매입·매각 시 소유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2020년 10월 말 기준 완전출국하거나 사망한 외국인 명의의 차량을 이전받고도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차량이 13천여 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경찰청은 매년 내·외국인의 불법 명의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표 10]과 같이 2017년부터 단속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대포차 검거 현황(2015~2019년 8월)

(단위: 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검거 대수	9,910	26,109	13,460	3,188	1,075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4) 체류기간 만료로 「출입국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하는 경우를 의미함

### Ⅲ.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11]과 같이 범죄 외국인 및 세금 체납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 출국 외국인 등 보유 차량 관리 분야에서 총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11] 분야별·기관별 지적사항

(단위: 건)

구분	계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계	10	6	1	2	1
범죄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 분야	5	4			1
세금 체납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 분야	4	2		2	
출국 외국인 등 보유 차량 관리 분야	1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가) 범죄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 분야

- 경찰청은 지명수배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정지 또는 입국 시 통보를 요청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등 지명수배 외국인에 대한 신병 확보 조치 미흡
- 법무부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기준을 명확히 마련 하지 않아 일선 출입국 관서별로 출국조치 업무를 일관성 없이 처리하고 있었고,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조치 없이 체류를 부당 허가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한 체불임금 수령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나) 세금 체납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 분야

- 법무부는 체류허가 기간 제한 대상인 세금 체납 외국인에 대하여 시스템 미비 또는 담당자 업무 미숙 등으로 체류허가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허가
- 국세청은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요청 등의 출입국 관리 업무를 누락하거나 지연 처리

#### (다) 출국 외국인 등 보유 차량 관리 분야

- 국토교통부는 대포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의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이 계속 운행되도록 방지

이에 대하여 경찰청에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한 출국정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요청 규정을 마련하고, 출국정지 등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적정한 출국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법무부에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국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체류를 허가한 출입국 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하였다.

또한, 법무부에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입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허가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장기간 체류허가 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한편, 국세청에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국 시 통보 요청이 누락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끝으로 국토교통부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포차로 의심되는 외국인 명의 차량 13,003대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령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통보하였다.

## 2.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 가. 범죄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 분야

#### 실태

#### 1) 범죄혐의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입국 시 통보 현황

「형법」 제2조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을 적용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자의 경우 지명수배<sup>5)</sup>를,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자의 경우 지명통보<sup>6)</sup>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2020년 10월 말 현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외국인 현황을 보면 [표 12]와 같이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은 6,782명이 고, 지명통보 중인 외국인은 16,872명이다.

[표 12] 외국인에 대한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현황(2020년 10월 말)

(단위: 명, %)

구분	계	경찰청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지명수배(비율)	6,782(100.0)	5,611(82.7)	759(11.2)	412(6.1)
지명통보(비율)	16,872(100.0)	10,447(62.1)	1,732(10.3)	4,663(27.6)

자료: 경찰청 등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와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같은 법 시행

5) 지명수배는 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과 ② 지명통보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실시되며, 발견 시 체포 또는 구속됨(「경찰수사규칙」 제45조, 제46조)

6) 지명통보는 ①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과 ②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발견 시 1개월 내에 지명통보 관서에 출석해야 하며 미출석 시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있음(「경찰수사규칙」 제47조, 제48조)



규칙 제6조의2 등에 따르면 [표 13]과 같이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일정 기간 출국을 정지<sup>7)</sup>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출국정지 대상자가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에 따라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를 요청하면 범죄 혐의자의 재입국 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sup>8)</sup>에서 해당 사실을 요청기관에 통보해 주고 있다.

[표 13]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제도 현황

구분	출국정지 사유	출국정지 기간
수사 단계	▪ 기소중지 결정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영장 유효기간 이내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자(체포·구속영장 발부자, 지명수배자)	3개월 이내
	▪ 기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개월 이내
재판 단계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	3개월 이내
형 확정 이후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벌금(1천만 원 이상) 또는 추징금(2천만 원 이상) 미납자	3개월 이내

자료: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재구성

그런데 출국정지 업무 등의 처리과정을 보면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출국제한 요청 사유와 예정기간 등을 기재한 출국제한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해 출국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와 제2조의3), 입국사실 통보의 경우에도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법무부가 범죄 혐의자의 재입국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어, 범죄 혐의자인 외국인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출국정지와 입국시 통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범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인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청이 지명수배

7) 출국금지과 출국정지 모두 일정기간 출국을 제한하는 것이나 국민의 경우 출국금지, 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출입국관리법」 제4조와 제10조)

8) 6개 출입국·외국인관리청과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개 출장소 등으로 구성(2020년 10월 말 기준)

중인 [표 12]의 외국인 5,611명을 대상으로, 일선 경찰관서가 지명수배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출국정지 대상자가 이미 출국한 경우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 요청을 누락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성범죄로 처벌된 외국인의 출국조치 및 입국금지 현황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범죄 현황을 보면 [표 14]와 같이 2019년 한 해에만 살인이나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905건)와 폭행·상해 등의 폭력범죄(8,769건), 사기나 횡령과 같은 지능범죄(4,388건) 등 총 36,400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외국인 범죄 현황(2019년)

(단위: 건)

구분	계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마약범죄	기타
인원수	36,400	905	8,769	4,388	1,027	21,311

자료: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재구성

그리고 외국인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조사를 거쳐 해당 외국인의 강제퇴거 여부를 심사·결정하되 여권 미소지나 교통편 미확보 등으로 강제퇴거 대상자를 즉시 국외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일시 수용하고 있고, 강제퇴거 대상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송환하는 강제퇴거 대신에 일정한 기간 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sup>9)</sup>하고 있다.

그리고 출국조치(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표 15]와 같이 범죄와 형벌의 종류 등에 따라 출국조치 여부와 입국금지<sup>10)</sup> 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9)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퇴거 조치가 실시됨(「출입국관리법」 제68조)

출국조치와 함께 5년 이상 입국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벌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sup>11)</sup> 출국조치 대신 체류를 허가할 수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벌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반면,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성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sup>12)</sup>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경우 국민의 배우자 등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용 검토 대상자일지라도 범죄의 유형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출국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조치 하도록 하는 등 출국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입국금지 기간도 일반 범죄와 달리 5년으로 가중하고 있다.

[표 15] 범죄행위로 처벌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및 입국금지 기준

구분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벌금형 선고	
		일반 범죄	성범죄 등 특정 범죄
출국조치 대상	전원 출국조치 원칙	300만 원 이상 등 일부만 출국조치	금액 관계 없이 전원 출국조치 원칙
입국금지 기간	5년~영구	횟수·금액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지 않거나 1~3년간 입국을 금지	5년

자료: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재구성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출입국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성범죄로 처벌된 외국인을 중심으로 출국조치 및 입국금지 조치가 엄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련

10)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데 비해 유죄 확정자에 대한 출국조치와 입국금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1) 국민의 배우자로서 본국 송환 시 사실상 삶의 기반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이는 외국회사 국내 지점 등의 임직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등임(2014년 8월, 법무부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  
 12)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취·유인 및 상습 강도·절도와 보복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관련 범죄 등임

규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강제퇴거를 위해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적정한지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문 제 점

### 1)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업무 처리 부적정

#### 1. 업무 개요

경찰청은 범죄 혐의자인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45조 등에 따라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조치를 한 후 전국 경찰관서로 하여금 지명수배자 발견 시 체포 또는 구속하여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29조 등에 따라 경찰관서는 범죄 혐의자인 외국인이 수사 및 재판받을 때까지 출국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있고, 범죄 혐의자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재입국 시 해당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2.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한 출국정지 미요청

##### 가. 관계법령 등

「출입국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는 요청 사항을 심사하여 출국을 정지<sup>13)</sup>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수사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범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3) 출국정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고,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가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은 영장의 유효기간 동안 출국을 정지할 수 있음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등에 대해 지명수배가 허용되므로 지명수배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출국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에 가족과 생활기반이 있는 국민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 지명수배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다시 입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청은 각 경찰관서가 범죄 혐의자인 외국인에 대해 소재 불명을 사유로 지명수배하는 경우 출국정지를 함께 요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명수배자인 외국인의 출국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경찰청은 지명수배 절차와 지명수배자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규칙」<sup>14)</sup>(경찰청 훈령) 등에 지명수배자의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각 경찰관서가 지명수배자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 중 2020년 10월 말 전국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 5,611명 중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된 2,931명을 대상<sup>15)</sup>으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방경찰청 □경찰서는 2015. 3. 9. 소위 ‘보이스 피싱’으로 2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사유로 2015. 9. 11. 중국인 A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12. 14. 지명수배하고도 출국정지 요청을 하지 않아 위 사람은 2016. 7. 1. 지

14) 지명수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거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2020. 12. 31. 「범죄수사규칙」 개정 시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은 그 내용이 「범죄수사규칙」에 반영되면서 폐지되었음

15)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된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출입국 기록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어 이번 감사에서는 지명수배된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음

명수배 상태로 아무런 제재 없이 출국하였고 이후 다시 입국하지 않아 2020년 11월 말 현재까지 수사를 받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 △경찰서는 2015. 7. 11.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10. 16. 필리핀 국적의 B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10. 30. 지명수배하고도 출국정지 요청을 하지 않아 위 사람은 2019. 5. 1. 지명수배 상태에서 출국하였고 이후 다시 입국하지 않은 채 수사를 회피하고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각 경찰관서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2,931명을 지명수배하고도 2,686명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하지 않거나 출국정지 후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장 신청을 누락하는 등으로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출국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2,686명 중 480명은 [표 16]과 같이 ‘보이스 피싱’ 관련 범죄가 포함된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또는 살인·강도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716명은 2021년 1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나 출국정지 조치가 되어있지 않아 자유로운 출국이 가능한 상태였다.<sup>16)</sup>

[표 16] 지명수배 이후 출국한 외국인의 범죄 혐의 현황(2020년 10월 말)

(단위: 명)

계	사기·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등	살인·상해 폭행 등	문서 위·변조 등	절도·강도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기타
480	147	71	64	63	36	26	73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 3. 이미 출국한 지명수배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시 통보 미요청

16) 출국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2,686명의 외국인 중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480명)하거나 국내에 체류(716명) 중인 자를 제외한 나머지 1,490명은 지명수배 전에 출국하였음

## 가. 관련 규정 등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2조17)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사건 담당자는 수배 관리자에게 지명수배를 의뢰하기 전에 지명수배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외 출국 여부를 포함하여 연고지 거주 여부와 가족 등과의 연락 여부 등을 수사한 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관서가 지명수배를 의뢰하기 위해 범죄 혐의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범죄 혐의자가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재입국 시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해 특정인의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입국 시 해당 사실을 통보<sup>18)</sup>해 주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지명수배된 외국인이 이미 출국하여 출국정지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서가 법무부에 지명수배된 외국인의 재입국 시 해당 사실의 통보 요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경찰관서의 지명수배자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경찰청은 지명수배된 외국인이 이미 출국한 경우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요청 여부를 각 경찰관서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다가 입국 시 통보 요청 등 국외 도피 수배자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5

17) 2020. 12. 31. 이전에는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음

18)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탑승객 정보를 분석하여 통보 요청된 사람의 입국 정보를 경찰관서에 통보 중임



월 「국외 도피 수배자 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해 당시 입국 시 통보 요청이 누락된 지명수배자 일부<sup>19)</sup>에 대한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도록 각 경찰관서에 지시하였을 뿐, 지명수배자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범죄수사규칙」 등에 입국 시 통보 요청과 관련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중 2020년 10월 말 현재 경찰청이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 중 지명수배 전·후로 출국하였다가 지명수배 상태에서 다시 입국한 기록이 있는 168명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관서가 입국 시 통보를 법무부에 요청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그중 57명(33.9%)은 입국 시 통보 요청이 되지 않아 경찰관서가 해당 외국인의 입국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중국 국적 C는 2012. 3. 31. 상해를 하였다는 사유로 2012. 4.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같은 해 6. 28. 지명수배되었으나 같은 해 11. 3. 출국<sup>20)</sup>하였다가 같은 해 11. 24.에 입국한 후 2013. 6. 15. 다시 출국하는 등 지명수배 이후 2018. 7. 21.까지 13차례에 걸쳐 출입국을 반복하는 동안 관할 ▷지방경찰청 ▽경찰서는 이를 모르고 있는 등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 57명이 입국하였는데도 관할 경찰관서가 이를 알지 못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된 지명수배 외국인 2,931명 중 176명은 2021년 1월 현재 국외에 체류 중인데도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지 않아 해당 외국인이 다시 입국하더라도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지명수배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19) 입국 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명수배자 전원이 아니라 별도 하달하는 수배자에 대하여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도록 함

20) 2012. 11. 3. 출국 당시 지명수배 상태였으나 ▽경찰서가 출국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출국할 수 있었음

지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경찰청은 그간 일선 경찰관서에 해외 체류 중인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국내 체류 중인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출국정지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외 도피 지명수배자에 대한 조치를 실무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 및 입국 시 통보 요청 등과 관련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훈령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외국인 지명수배자 중 국내에 체류 중임에도 출국정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국외 체류 중인데도 입국 시 통보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정지 또는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는 한편, 외국인을 지명수배하는 경우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출국정지 또는 입국 시 통보를 법무부에 요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 2) 벌금형 선고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의 일관성 미흡

---

### 1. 업무 개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등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범죄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강제퇴거나 출국명령<sup>21)</sup>을 위한 출국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은 법무부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범죄행위로 처벌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강제퇴거 시킬 수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등에 따라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특정 범죄행위는 벌금 액수에 관계없이 강제퇴거가 가능하며, 기타 범죄행위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와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강제퇴거가 가능하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르면 강제퇴거 대상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47조와 제58조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처벌된 외국인에 대한 조사와 심사결정을 통한 출국조치 업무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범죄행위로 처벌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기준을 구

---

21)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모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출국을 강요당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강제퇴거는 물리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데 비해 출국명령은 물리적 강제력 없이 자진 출국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다만,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자진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됨

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일선 기관별로 유사한 범죄행위에 대한 출국조치 여부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4. 8. 27. 출국조치 관련 처분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을 수립하여 일반 범죄는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sup>22)</sup>에 한해 출국조치하되,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규정된 반사회적 범법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벌금 액수에 관계 없이 출국조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심사결정 기준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출국조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등의 경우<sup>23)</sup> 출국조치하는 대신 체류를 허가할 수 있으나, 성폭력범은 원칙적으로 체류를 허가하지 않고 출국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출입국·외국인 관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위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출국조치 여부를 다르게 결정해 업무 처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강제추행 등의 성범

22)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 500만 원 이상,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조치 대상임

23) 국민의 배우자로서 본국 송환 시 사실상 삶의 기반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다고 보이는 외국회사 국내 지점 등의 임직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과학·문화·체육 등의 특정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를 계속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임

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외국인 281명을 대상으로 출국조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17]과 같이 177명은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통해 출국조치되었으나, 30명은 국내에 계속 체류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외국인에 대한 조치 현황(2018~2019년)

(단위: 명, %)

구분	합계	출국조치			체류허가	입국규제 <sup>1)</sup>	기타 <sup>2)</sup>
		소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인원수 (비율)	281 (100.0)	177 (63.0)	72 (25.6)	105 (37.4)	30 (10.7)	26 (9.2)	48 (17.1)

주: 1. '입국규제'는 조사 당시 외국인이 이미 출국하여 출국조치 없이 재입국을 일정 기간 금지한 경우를 의미함

2. '기타'는 소재 불명 등으로 조사를 하지 못해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등임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30명의 체류허가 사유를 살펴보면 그중 25명은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 출국조치가 어려운 경우인 데 비해, 5명의 경우 국내 학교에서 성실하게 생활하였다거나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없는데도 외국 국적 동포<sup>24)</sup>라는 사유로 체류를 허가하는 등 출국조치 지침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체류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은 2019. 3. 28.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몽골 국적의 D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도 출국을 명령한 데 반해, [표 18]과 같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3개 기관은 2019. 9. 6.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E 등 3명에 대해 국내에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출국조치 대신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등 유사한 범죄행위에 대한 출국조치

2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외국 국적 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음

여부가 다르게 결정되고 있었다.

[표 18] 성범죄(강제추행)로 벌금형이 선고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미이행 사례

연번	소관기관	외국인 성명 (국적, 생년월일)	벌금액 (선고일자)	체류자격	체류허가 사유	심사결정 내용(심사결정일)
1	♡	E (키르기스스탄, -)	200만 원 (2019. 9. 6.)	유학 (D-2) <sup>1)</sup>	학교생활 성실 수행	●과학기술원 재학 중으로 초범 및 반성 등을 사유로 체류허가(2019. 11. 1.)
2	♠	F(몽골, -)	250만 원 (2019. 7. 10.)	유학 (D-2)		■대학교 재학 중으로 생활 태도가 성실하다는 사유 등으로 체류허가(2019. 9. 26.)
3	♣	G (중국, -)	200만 원 (2019. 7. 25.)	구직 (D-10) <sup>2)</sup>		건실한 유학 생활로 ◆대학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체류허가(2019. 8. 9.)
4	☆	H (중국, -)	200만 원 (2018. 10. 8.)	재외동포 (F-4) <sup>3)</sup>	외국 국적 동포	외국 국적 동포이며 반성한다는 사유로 체류허가(2019. 7. 17.)
5	♣	I (중국, -)	300만 원 (2019. 3. 29.)	재외동포 (F-4)		외국 국적 동포로 초범이며 반성한다는 사유 등으로 체류허가(2019. 8. 8.)

주: 1. '유학(D-2)'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여  
 2. '구직(D-10)'은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에게 부여  
 3. '재외동포(F-4)'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출입국·외국인청은 2018. 11. 26.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러시아 국적의 J가 외국 국적 동포로서 초범이라는 사유로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한 데 비해, [표 18]과 같이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등 2개 기관의 경우 2018. 10. 8.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중국 국적의 H 등 2명에 대해 외국 국적 동포로서 초범이라는 사유 등으로 출국조치 없이 체류를 허가하는 등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출국조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된 위 심사결정 기준과 달리 출입국·외국인 관서별로 유사한 범죄행위에 대한 출국조치 여부가 다르게 처리되고 있어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일부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위 심사결정 기준상 예

외적인 국내 체류허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성실한 유학생활동’이나 ‘외국 국적 동포’와 같은 사유로 국내 체류를 허가한 것은 ‘기타 인도적인 사유’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위 기준상 기타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 형사범에 대해 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어 보이므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위 심사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규정하고 해당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법무부장관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 조치 기준이 일선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출국조치의 일관성·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 3)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체불임금 수령 지원 필요

---

#### 1. 업무 개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보호소<sup>25)</sup>는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sup>26)</sup> 등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sup>27)</sup>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및 퇴거업무

---

25)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ㄱ과 ㄴ에 2개 시설을 운영 중이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는 아니나 남부 지역의 외국인보호소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2020년 10월 말 기준)

26) ‘불법체류’는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고, ‘불법취업’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부여받고도 취업한 경우를 의미함

등을 수행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등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 등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1항에 따라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를 조사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의 체불임금 수령을 지원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는 허가된 체류 기간이나 체류자격을 위반하여 취업한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sup>27)</sup>하고 있어 국내 법질서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를 위해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도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법무부 훈령) 제43조에 따르면 외국인보호 소장 등이 지정하는 고충상담관이나 고충처리담당자는 수용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질병 등 생명·신체장애 관련 사항과 함께 체불임금에 대한 고충상담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10월)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제기한 체불임금 관련 진정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표 19]와 같이 매년 처리 완료된 사건의 68.2%에서 73.9%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sup>29)</sup>하

27) 강제퇴거 대상은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 또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 국내에서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임

28)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18875 판결 등



는 등으로 진정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가 진정사건을 제기한 경우 2/3이상은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9] 체불임금 관련 진정사건 처리 실적(2016년~2020년 10월)

(단위: 건,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1~10월)	
접수	217,530	209,714	224,781	227,739	167,061	
처리 완료	지도 해결(비율)	152,290(72.1)	149,464(73.9)	151,504(69.5)	150,798(68.2)	114,014(69.9)
	사법 처리(비율)	58,951(27.9)	52,751(26.1)	66,454(30.5)	71,820(31.8)	49,139(30.1)
	소계(비율)	211,241(100.0)	202,215(100.0)	217,958(100.0)	222,618(100.0)	163,153(100.0)
처리 중	6,289	7,499	6,823	5,121	3,908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법무부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외국인보호소 등으로 하여금 피보호 외국인에 대하여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고충상담을 실시한 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외국인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등으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체불임금 수령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법무부는 2007년 2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 수용 중 이던 외국인이 체불임금 미수령으로 인한 감정 악화로 방화를 저질러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3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외국인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수용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2020년 10월 현재 이와 같은 지원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sup>30)</sup>

이에 따라 이번 감사 중인 2020년 10월 ♣외국인보호소와 &외국인보호소, ♠

29)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30) 2020년 10월 현재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을 운영 중인 3개 기관을 확인한 결과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실시하는 기관은 없었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3개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750명 중 359명<sup>31)</sup>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08. 3. 17. 입국하여 12년 7개월간 우리나라에 체류한 중국 국적 K의 경우 130,000천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29명이 계 294,160천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외국인 29명을 대상으로 체납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확인한 결과 [표 20]과 같이 12명은 고용노동부와 같은 국가기관의 지원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이를 알고 있어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고, 17명은 지인이나 노무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체불임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등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퇴거 될 예정이었다.

[표 20]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체불임금 회수 방법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분	계	국가기관의 지원 사실을 몰라 회수 포기	국가기관 지원은 알고 있으나 회수 포기	지인을 통해 해결 중	노무사를 통해 해결 중
인원수	29	11	1	13	4
체불임금 금액	294,160	12,480	3,000	36,880	241,800

자료: 보호시설 수용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2020년 10월) 결과 재구성

그러나 위 29명의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보호소 등의 고충상담 현황을 보면 고충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 후 당사자의 상담 미신청 등에 따라 고충상담이 실시되지 못한 6명을 제외한 23명의 경우 고충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고도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외국인의 대부분은 불법

31)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4개 언어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해당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음

체류자 신분으로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임금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어 고충상담관이 체불임금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사건 제기를 원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법무부 관할 외국인보호소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간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법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고충상담을 실시한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사건 제기를 원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등 임금이 체불된 외국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 4)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지연

---

##### 1. 업무 개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서 범죄행위로 처벌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와 입국규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9. 1. 18.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국내에 단기체류<sup>32)</sup> 중이던 러시아 국적의 L이 강제추행으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통보받아 같은 해 1. 21. 위 사람에 대한 출국조치 및 입국금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 2. 관계법령 등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법무부의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의 범죄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반 범죄는 벌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sup>32)</sup>에 한해 출국조치하되,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같이 특정한 범죄행위는 벌금액이나 부과횟수에 관계 없이 출국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의 범죄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액과 범죄횟수 등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지 않거나 1년 내지 3년간 입국을 금지<sup>34)</sup>하나, 성범죄 등 중대 법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금액·횟수에 관계 없이 5년 이상 입국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등 성범죄자는 일반 형사범에 비해 출입국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이전에는 벌금형이 선고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와 입국금지 업무를 함께 처리함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이미 출국하여 출국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sup>35)</sup> ‘입국 시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한 후 재입국 시 출국조치와 함께 입국을

32)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는 장기체류, 90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는 단기체류로 구분하고 있음

33)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 500만 원 이상,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조치 대상임

34) 벌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최근 1년 이내 벌금 합산 금액 500만 원 이상 또는 1회 벌금액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1년간 입국을 금지하며, 벌금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3년간 입국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

35) 벌금형이 선고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등의 출국조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해당 외국인을 조사한 후 심사 결정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없어 출국조치가 어려움(「출입국관리법」 제47조와 제58조, 제59조)

금지하였으나, 2019. 1. 1.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이미 출국한 외국인도 출국조치가 없더라도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2019년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외국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관련 사항을 조사한 결과 해당 외국인이 이미 출국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에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5년간 금지<sup>36)</sup>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출입국·외국인청은 L이 2018. 11. 20.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2019. 1. 18.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고 같은 해 1. 21. 위 사람을 조사하였으나 위 사람이 국내에 단기체류 하다가 조사 이전인 2018. 12. 22.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는 개정된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즉시 위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지 않은 채 2019. 1. 21. 위 사람을 5년간 ‘입국 시 중점 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재입국 시 출국조치와 함께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결정하였다.

이후 위 관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위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누락된 사실이 지적되자 위 사람의 범죄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1. 1. 6. 법무부에 위 사람에 대한 5년간<sup>37)</sup>의 입국금지를 요청하여 같은

36) 확정 판결을 받고 입국규제 전 출국한 사람은 확정 판결 후 최초 출국일부터, 확정 판결 전 출국한 사람은 확정 판결일부터 입국금지기간을 기산함

37) 확정 판결 후 최초 출국일(2018. 12. 22.)부터 5년간 입국을 금지함

해 1. 11. 법무부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입국금지 조치가 장기간 지연<sup>38)</sup>되었다.

그 결과 성범죄의 경우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사유로 일반 범죄에 비해 출국 조치와 입국금지 등의 출입국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취지와 다르게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제재 처분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출입국·외국인청은 이 건은 담당 공무원이 2019. 1. 1. 개정된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행정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이 제·개정되는 경우 전 직원이 공유함은 물론 부서장 등이 해당 사항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앞으로 범죄행위로 처벌되어 입국금지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누락 또는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38) 다만, 위 사람은 입국금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던 2019. 1. 21.부터 2021. 1. 11.사이에 국내에 입국하지는 않았음

---

## 5)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제재업무 부당 처리

---

### 1. 업무 개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2018. 3. 15. 재외동포 자격(F-4)<sup>39)</sup>으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M이 폭행사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자 엄중경고한 후 같은 해 9. 28.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재불명으로 출입국사범 조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10. 8. 위 사람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sup>40)</sup>하였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청은 2020. 2. 11.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위 관서를 방문한 M에 대하여 출입국사범으로 조사를 실시해 같은 해 2. 12. M에 대한 30일 이내 출국명령과 함께 5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입국금지 조치를 하였다.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은 2020. 2. 17. M이 용서를 빌며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요청하자 위 사람에 대한 기존 출국명령과 함께 5년간 입국을 금지한 입국 규제 조치를 입국규제 대상자에 대한 체류허가인 엄중경고로 변경하는 한편, 같은 해 2. 19. 기존 입국금지가 잘못 입력되어 승인되었다는 사유로 위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법무부에 상신하여 같은 해 2. 28. 법무부로 하여금 위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sup>41)</sup>하였다.

### 2. 관계법령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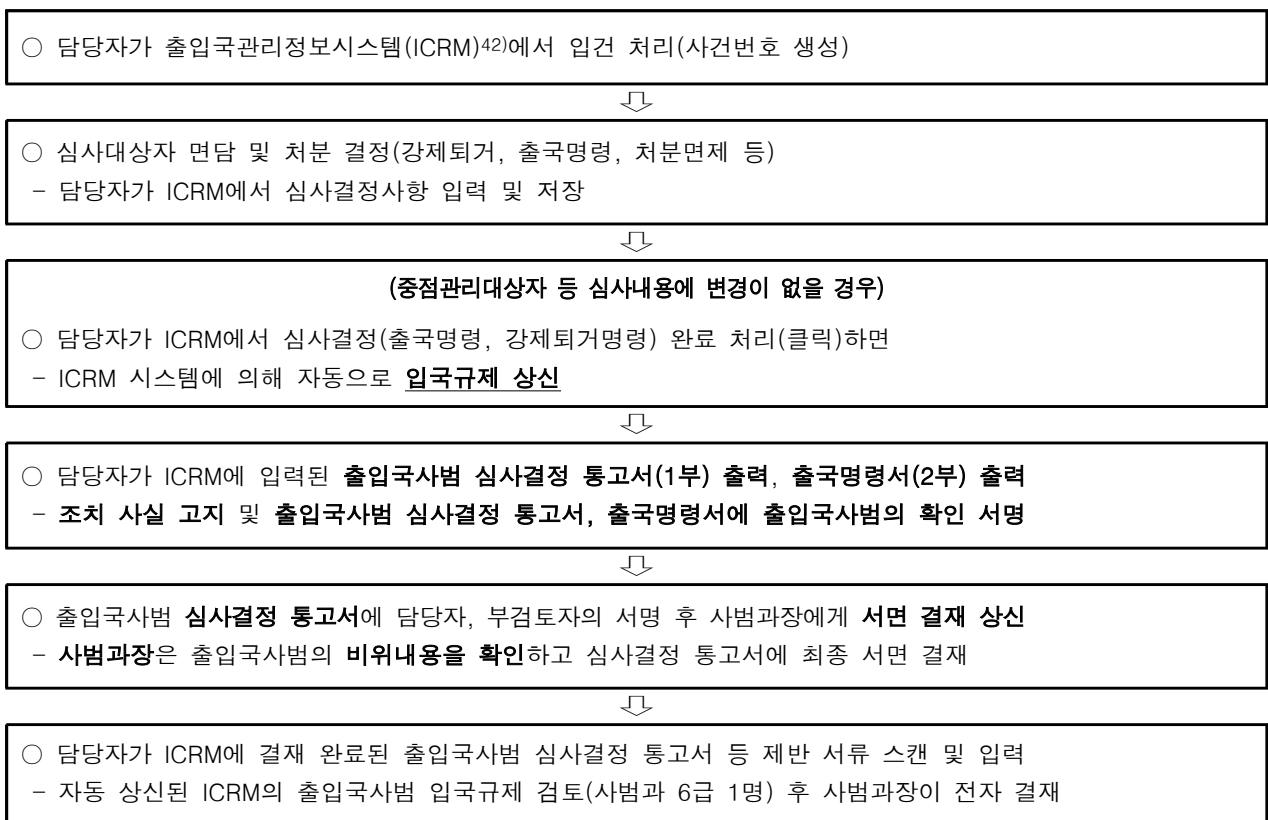
39) M은 2015. 2. 24. 단기방문 자격(C-3)으로 입국하여 같은 해 5. 18. 재외동포 자격(F-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재외동포 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0. 5. 8.이었음

40)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은 외국인의 범죄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소재불명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자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한 후 소재 발견 시 조사를 거쳐 출국조치와 함께 입국금지 처분을 하고 있음

41)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입국금지 업무를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등에 따라 심사결정을 통한 입국금지 권한은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함. 다만,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경우에도 해제는 법무부(출입국심사과)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제68조 등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강제퇴거 대상이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강제퇴거 대신 출국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출국조치 등에 대한 심사 결정 및 입국규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출국조치 등 심사결정 및 입국규제 과정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 및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 국내 체류가 가능한 일

42)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mmigration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은 출입국심사, 체류외국인관리, 출입국사범관리 등 출입국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반범과 달리 성폭력범은 원칙적으로 출국조치를 하며, 5년 미만 징역(금고)을 받은 경우 일반범은 5년간 입국금지 대상이나 성폭력범은 10년간(재외동포는 5년간) 입국을 금지<sup>43)</sup>하도록 하는 등 성폭력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위 지침에 따르면 입국규제 대상자인 출입국사범<sup>44)</sup>이 ① 만 17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자 ② 국민의 배우자 ③ 무국적자인 사람(이하 “면제대상자”라 한다)으로서 국익<sup>45)</sup>이나 인도적 사유<sup>46)</sup>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등이 입국금지를 면제할 수 있고,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금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 등이 본부(출입국심사과)에 입국금지 면제를 상신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sup>47)</sup>, 사실 오인 등에 의해 입국금지 조치된 사람에 대하여도 청장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및 해제 상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 「사범과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입국규제 대상자에 대한 체류허가, 입국규제 면제 또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상신은 청장의 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입국규제 면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국익이나 인도적 사유로 입국금지 면제 필요성이 인정되어 청장 결재로 체류허

43)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는 1년, 성범죄는 5년간 입국금지

44) 입국금지 면제 요건 검토 시, 출국조치를 받은 자가 출국 전이면 입국금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법무부 출입국심사과)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동안 입국규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해제를 검토(법무부 이민조사과)하고 있으며, 실무상 입국금지 면제 조치를 “특별해제”라고 표현

45) ① 일정 조건의 외국인투자가(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 또는 외국법인의 파견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등) ②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5년 이상 사업 경영 ③ 전문지식,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산업 등의 종사자로서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④ 기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46) ① 국민·영주자격 소지자 등의 배우자 및 그 직계가족 ② 국내 출생자 등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자 ③ 국내 생활기반이 있는 외국국적동포 ④ 임신, 미성년 자녀 양육자로 국내 생활기반이 있는 자 ⑤ 만 17세 미만 또는 만 64세 이상자 ⑥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⑦ 산재 등으로 국내 치료가 필요한 자 ⑧ 소송수행을 위해 국내 장기 체류가 필요한 자 ⑨ 기타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자

47) 입국금지 면제를 받았더라도 출국조치에 따라 일단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국내 체류가 가능하나 출국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이 도과하면 불법체류자로 관리됨

가를 받은 자 또는 청장 결재로 본부에 상신하여 입국금지 면제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출국 및 입국금지 조치<sup>48)</sup>를 하여야 하고, 조치된 입국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면제요건 충족 등 입국금지 면제의 필요성 또는 사실 오인의 내용을 사실대로 적시하여 청장 결재를 받은 후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청장 결재 없이 임의로 체류허가를 하는 등으로 당초 처분 등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출국명령 후 청장 결재 없이 국내 체류를 허가

■출입국·외국인청 ◎과 N은 위 관서에서 2018. 9. 28. ●지방검찰청으로부터 M에 대해 강제추행 2회 및 특수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해 9월경(날짜 모름)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같은 해 10. 8.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관리하고 있던 중인 2020. 2. 11.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위해 위 관서를 방문한 M을 조사하여 이미 한 번의 엄중경고를 받은 사실(M은 2018. 3. 15.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금회에 한하여 엄중경고”하는 심사결정을 위 관서로부터 받음)이 있다는 점 및 미혼 중국인(만 24세)으로 입국금지 면제대상자가 아니며 출국조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도 없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5년)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N은 2020. 2. 12. 강제퇴거 대신 자진 출국을 하겠다는 M에 대하여 출국명령과 5년간 입국금지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사항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48)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강제퇴거명령하지 않고 체류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단 출국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 중 국민의 배우자로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입국금지 면제조건에 해당할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하여 국내에 입국·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국금지 면제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체류허가는 부당

하 “ICRM”<sup>49)</sup>이라 한다)에 입력·저장하고 ICRM을 통해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이하 “심사결정서”라 한다)를 출력하여 M의 확인·서명과 O의 검토를 거친 후 과장에게 결재를 상신<sup>50)</sup>하여 과장 P로부터 최종 서면 결재를 받아 이견 심사결정을 완료하였으며, M에게 출국명령과 함께 5년간 입국금지를 조치하는 처분을 하였다.<sup>51)</sup>

그리고 N은 2020. 2. 12. M에 대한 5년간 입국금지(규제만료일 2025. 2. 11.)를 ICRM에 등재하기 위하여 같은 해 2. 13. O의 검토를 거친 “출입국사범 규제등재 심사결정서”에 대하여 과장 P의 전자 결재를 받아 M에 대한 입국금지(5년) 조치가 ICRM에 등재되도록 하였다.<sup>52)</sup>

그런데 N은 다음 날부터 M이 여러 차례 사무실로 찾아와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 5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M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확인서<sup>53)</sup>와 선처를 바라는 직장 동료 및 모친의 탄원서, 모친의 진단서<sup>54)</sup> 등 각종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비밀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N은 2020. 2. 17. M에 대하여 출국명령과 입국금지를 하는 기존 심

---

49) Immigration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출입국심사, 체류외국인관리, 출입국사범관리 등 출입국 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

50)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및 입국금지를 위한 심사결정 시 전결권자는 사범과장이고, 과장에 대한 결재 요청 이전에 ◎과의 선임 직원인 O가 심사결정 내용의 적정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있음

51) 출국명령 조치는 N이 2020. 2. 12. 심사결정서 및 출국명령서에 M의 서명을 받고 출국명령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당시 심사결정서는 N이 당시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여 확인되지 않았고 과장 P가 입국규제 전 관련 내용을 심사결정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며, 법무부의 입국규제 해제 심사결정서에 규제 문서의 시행일이 2020. 2. 12.로 되어 있는 등 서면 결재가 그날 완료됨

52) 출입국 심사결정 내용을 ICRM에 입력한 후 저장하면 자동으로 입국규제 내용이 생성되며, ICRM에서 결재선을 따라 전자결재가 이루어지면 입국규제가 등재됨

53)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 건 산업재해 관련 자료는 2018. 12. 6.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계속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54) M 모친의 진단서는 ‘추간관 장애’가 있으나 특별한 합병증이나 발견되지 않은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모친 부양을 위해 M의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는 2020. 2. 17. M에 대한 출국명령을 체류허가로 변경한 다음 날(같은 해 2. 18.) 발급된 것임

사결정의 내용을 ICRM에서 삭제하고 대신 강제퇴거 대상에 대해 체류허가 하기 위하여 엄중경고만 하는 내용의 심사결정 내용을 입력·저장하고 심사결정서를 출력하여 결재권자인 청장 대신 과장을 결재자로 기안하였으며, 이견 체류허가는 비위 정도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고 체류를 허가할 인도적 사유도 미약하다는 사유로 반대한 O<sup>55)</sup>를 설득하여 검토를 받은 후 M에 대해 기존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조치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 및 체류허가는 청장 결재사항이라는 점을 보고하지 않은 채 과장 P의 결재를 받았다.

한편, 위 관서 ◎과장 P(현 ㉠출입국·외국인청 ㉡과장)는 2020. 2. 12. M에 대해 출국명령과 함께 5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심사결정서를 결재<sup>56)</sup>한 바 있고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은 같은 해 2. 17. M에 대해 체류허가를 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서가 상신되었으므로 위 심사결정서는 당초 처분을 변경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대 법 위반자<sup>57)</sup>는 입국금지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출국 및 5년 동안 입국금지 조치 대상이며, 금고 이상 형사범인 입국규제 대상자에 대한 체류허가의 결재는 청장 결재사항이라는 관련 규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P는 2020. 2. 17. M에 대한 체류허가 관련 심사결정서를 결재할 때

55) O는 이 건의 보조 검토자로서 심사결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심사결정은 주 검토자 책임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보조 검토자는 주 검토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어서 주 검토자의 결정이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사결정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사범과 업무분장표」상에도 O는 N의 업무대행자로 기재되어 있음

56) 1차 심사결정서가 폐기된 상태이나 P는 입국규제 문서(출입국사범 규제등재 심사결정서)의 경우 법 위반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사결정서’에 결재한 후 그 내용을 참고해 입국규제 문서에 결재해 왔으며, 2020. 2. 13. 본인이 ICRM에서 M에 대한 입국규제 문서에 결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1차 심사결정서에 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음

57) 위 관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외국인 42명에 대해 사범처리하여 그중 32명은 출국조치하고 영주권자, 국민의 배우자 등 10명에 대해서는 체류허가 하는 등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체류허가는 매우 이례적임

에는 설령 이미 출국 및 입국금지 조치된 자에 대한 변경처분이라는 점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M은 입국금지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국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결재권자인 청장의 결재를 받아 체류허가를 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P는 N이 위 심사결정서의 결재를 상신하자 그대로 결재하여 이미 출국명령과 입국금지 조치가 완료된 M에 대하여 국내에 계속해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 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성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인 M이 출국조치<sup>58)</sup>되지 않은 채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으며, 2020. 3. 2.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체류기간을 1년 연장<sup>59)</sup>하는 허가를 받아 2021년 1월 말 현재에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 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여 입국금지를 해제

N은 2020. 2. 12.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M이 입국금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자 출국 후 5년간 입국금지하는 내용의 “중점관리대상자 등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 O의 검토 및 과장 P의 결재를 받아 M에 대해 2025. 2. 11.까지 5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M에게 입국금지 면제 사유가 있음에도 사실 오인 등의 사유로 입국금지 조치를 하였으나 입국금지 해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입국금지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및 「사범과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청장<sup>60)</sup>의 결재를 거쳐 당초 시행한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처

58) 성폭행범은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출국조치하도록 강화(「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

59) 체류기간 만료일이 당초 2020. 5. 8.에서 2021. 5. 8.로 변경되었음

60) 금고 이상의 형사범 등 입국규제 대상자에 대한 체류허가는 청장 전결 사항(「사범과 위임전결규정」)

분을 취소하는 한편 법무부(출입국심사과)로부터 입국금지 해제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N은 2020. 2. 17. M에 대하여 강제퇴거 명령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거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엄중경고만 하여 계속 국내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다시 심사결정서를 작성한 뒤 결재권자인 청장에게 결재를 상신하지 않고 과장 P의 결재만 받았다.

그리고 N은 2020. 2. 19. 기존 심사결정이 완료된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고 M에 대하여 출국명령 및 입국규제(5년) 조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엄중경고로 심사결정되었고,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는 없었으며 ICRM의 입국규제는 오입력되어 승인된 것이라는 사유로 조치가 완료된 입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입국규제(1S) 해제 상신” 문서를 작성한 뒤 청장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과장 전결사항으로 기안하여 과장 P의 결재를 받아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N은 법무부 ☎과 담당자인 Q와 R이 담당자의 실수로 입국규제를 상신하여도 과장 승인이 있으면 입국규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로 “입국규제가 오입력된 후 승인되었다”는 위 문서의 해제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전화로 그 의미를 문의하자 당초 출국명령과 입국금지를 하는 심사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숨긴 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ICRM에 잘못 입력되어 입국규제로 등재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담당자들이 ICRM을 통해 M에 대한 심사결정 이력을 조회하였으나, N이 2020. 2. 17. ICRM에 입력·저장된 1차 심사결정사항(출국

명령 및 5년간 입국금지)을 삭제하고 2차 심사결정사항(엄중경고)만 입력·저장하여 당초 출국명령이 체류허가로 변경된 사실 및 입국규제가 O의 검토와 과장 P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한편, P는 2020. 2. 12. M에 대해 출국명령과 함께 5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당초 심사결정서에 결재(서면)하고 같은 해 2. 13. 입국규제의 ICRM 등재를 결재(전자)하였으며, ICRM에 등재된 입국금지의 해제를 법무부 본부에 상신할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P는 M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법무부에 상신하는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입국금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입국금지 해제 사유가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 결재권자가 맞는지를 검토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반려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P는 2020. 2. 17. N이 체류허가에 대한 결재권이 청장에게 있는 금고 이상의 형사범인 M에 대하여 엄중경고만 하여 체류허가 하는 것으로 재작성한 2차 심사결정서의 결재를 상신하자 그대로 결재하였고, 같은 해 2. 19. 자신의 결재로 입국금지된 M에 대한 입국규제가 실수로 ICRM에 등재된 것처럼 N이 기존 입국금지 조치의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입국규제(1S) 해제 상신” 문서를 과장 전결사항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자 그대로 결재<sup>61)</sup>하였다.

그 결과 법무부는 2020. 2. 28. M에 대한 입국금지 5년이 ICRM에 잘못 입력된 것으로 판단하여<sup>62)</sup> 청장의 결재 없이 출입국·외국인청이 요청한 입국금지

61) 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요청은 청장의 결재사항이나, N은 사범과장을 전결권자로 기재하여 결재를 요청하였고 P도 이에 그대로 결재하였음

62) 법무부 담당자 Q는 M에 대한 출국명령이 체류허가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미흡한 M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해제를 승인함으로써 M에 대한 입국금지가 부당하게 해제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과 달리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출국조치 후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이 건의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함이 바람직하나 체류 기간의 만료일이 2021. 5. 8.까지로 심사결정 당시(2021. 2. 17.)로부터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아 취소의 실익이 없으므로 향후 실질심사를 통해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출국조치할 계획이며,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중대 법 위반자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의 대상인 외국인에 대해 체류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처분에 앞서 본부에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 및 규정 등을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법무부장관은 출국조치 및 입국규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N, P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N: 정직, P: 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개별처분요구사항 1번 참조]



## 나. 세금 체납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 분야

### 실 태

2020년 10월 기준 외국인의 세금 체납 현황을 보면 [표 21]과 같이 계 239,413명의 외국인이 내국세 138,713백만 원과 관세 2,709백만 원, 지방세 25,377백만 원 등 총 166,799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 중이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의 경우 지방세는 10만 원인데 비해 내국세는 2,630만 원이며 전체 외국인 세금 체납액의 83.2%를 내국세가 차지하고 있다.

[표 21] 외국인의 세금 체납 현황(2020년 10월 말)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계	내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 인원	239,413	5,265	326	233,822
체납 금액	166,799	138,713	2,709	25,377
1인당 체납액	0.7	26.3	8.3	0.1

주: 내국세와 지방세는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관세는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자료: 국세청 등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내국세의 세목별 외국인 체납 현황을 보면 [표 22]와 같이 2020년 10월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각각 85,626백만 원(61.7%)과 37,205백만 원(26.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20년 10월 기준 체납 내국세 138,713백만 원의 57.1%인 79,180백만 원은 납세의무자인 외국인이 완전출국<sup>63)</sup>한 상태로 압류 등을 통한 세금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22] 내국세 세목별 외국인 체납 현황(2020년 10월 말)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기타
전체 외국인 체납액	138,713	85,526	37,205	10,210	5,772
완전출국 외국인 체납액	79,180	60,901	15,346	1,712	1,221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63)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경우로 재입국 가능성이 적으며, 2020년 10월 말 현재 내국세 체납 외국인 5,265명 중 2,508명이 완전출국한 상태임

한편, 체납된 국세의 징수 수단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의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등을 통해 체납 세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표 23]과 같이 「출입국관리법」 제29조와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과 제36조의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미납 세금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표 23]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업무 흐름

구분	단계별 출국정지 업무 흐름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천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조사보고서(출국정지·연장·해제) 작성</li> <li>지방국세청에 출국정지 요청</li> </ul>
지방국세청(징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국정지 요청 건에 대한 적정성 검토</li> <li>국세청 본청에 출국정지 요청(공문으로 출국정지 요청서와 조사보고서 등 제출)</li> </ul>
국세청 본청(징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무부에 출국정지 요청(출국정지 요청자 명단 및 조사보고서 등 송부)</li> </ul>

자료: 국세청 「체납자 출국금지 업무처리 지침」 재구성

그러나 구체적인 출국정지 요건을 정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에서는 체납 금액 외에도 조세 채권 확보 가능성이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 등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고액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정지 요건이 충족되는 외국인은 많지 않다.

이와 같이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세금 등 체납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목적

으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6년 4월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 관리 지침」(법무부 예규)을 제정하였다.

위 지침의 주요 내용은 조세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나 체류자격 등과 관련한 「출입국관리법」상 각종 신규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존 1~5년 단위에서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2016년 5월부터 2017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18년부터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미납된 조세 등의 납부 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국세를 체납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체류 허가의 유효기간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제한되고 있는지, 출국정지 대상자에 대한 제재업무가 실효성 있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1)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업무 처리 부적정

### 1. 업무 개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통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이를 허가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세금(내국세·관세·지방세)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법무부는 2016년 4월 체납 세금 등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조세 등 체납 외국인 체류관리 지침」(법무부 예규)을 제정하였고, 이후 시범운영<sup>64)</sup>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국세나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체납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 등과 관련한 각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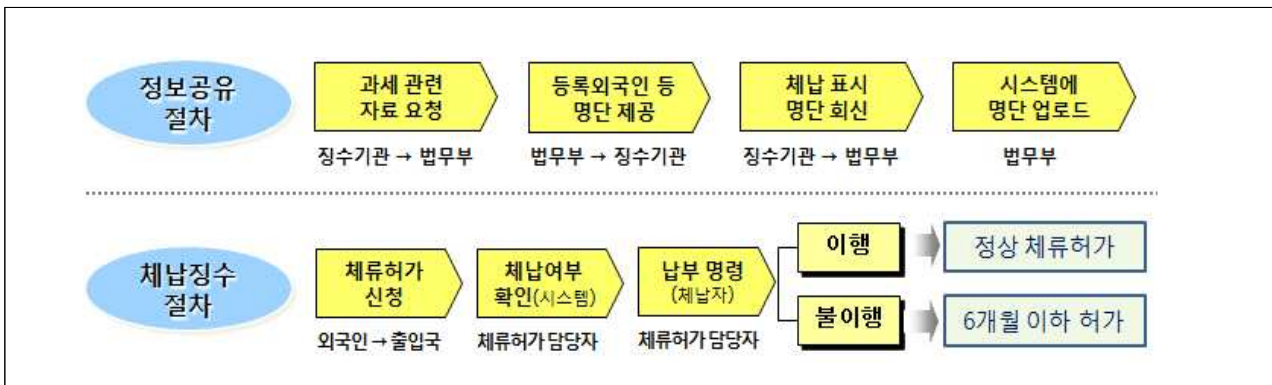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sup>65)</sup> 제한업무

64) 2016년 5월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에서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국 16개 지방 외국인·출입국 관서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한 후 2018년 1월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음

65) ‘체류허가’란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과 관련한 허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을 통한 최초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부여(「출입국관리법」 제32조), 체류자격 변경허가(같은 법 제24조), 체류기간 연장허가(같은 법 제25조),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같은 법 제21조)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처리 흐름은 [그림 2]와 같이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징수기관이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명단 제공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제공하고, 징수기관이 해당 외국인의 세금 등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하면 이를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공해 체류허가 담당자가 활용<sup>66)</sup>하고 있다.

[그림 2] 외국인 체류허가 시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절차도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는 세금 등을 체납한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sup>67)</sup>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명령서를 발급<sup>68)</sup>하고, 납부명령 이후에도 체납 세금 등이 자진납부되지 않는 경우 각종 허가의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며, 체납된 세금 등에 대한 납부명령을 3회 연속으로 받아 6개월 이내의 허가를 3회 받고도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지 않는 경우 4회째 신청 시에는 체류허가를 불허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류허가 제한업무 처리 과정과 위 체류관리 지침을 고려할 때

66) 체류허가 업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외국인등록번호나 성명 등을 조회하는 경우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의 체납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임  
 67) 최초로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금 등 체납이 없으므로, 과거 외국인 등록 후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함  
 68)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는 체류허가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법무부는 등록된 외국인 정보를 세금 등 징수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체납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유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위 체류관리 지침과 다르게 세금 등을 체납 중인 외국인에게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체류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출입국관리법」과 「국세징수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세를 체납 하더라도 입국은 금지할 수 없고 출국정지는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sup>69)</sup>하여 출입국 규제를 통한 불이익 부과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체납된 국세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체류허가 제한 제도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국세청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종합소득세 등)를 표본으로 ‘법무부-국세청’ 간 정보공유 및 국세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국세청에 국세 체납정보 조회를 요청할 대상인 외국인 명단을 추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설계 오류 등으로 외국인 등록 후 완전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여 재등록된 외국인 중 일부가 추출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중국 국적 S가 2018년 3월 완전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6월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 재등록<sup>70)</sup>을 하였고, 같은 해 7월 현재 국세 19억여 원을 납부

69)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는 ① 5천만 원의 이상의 국세 체납, ② 압류·공매나 담보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에 의한 조세채권 확보 불가, ③ 체납처분 회피 우려, ④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 송금,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국외자산 발견 등 6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 등 여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함(「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70) 과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되었던 외국인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할 의무가 있는데도 국세청에 대한 국세 체납자료 요청 대상자 명단에서 위 사람을 누락하여 국세 체납 사실을 회신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출입국·외국인청은 2019. 6. 11. 위 사람의 체류기간을 12개월 연장하였으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0. 6. 11. 위 사람의 체류기간을 12개월 다시 연장하는 등 6개월 이내로 제한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였다.

이처럼 [표 24]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 11월 말까지 1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 중인 외국인에게 부여된 계 2,151건의 체류허가 중 172건의 경우 법무부가 허가 신청자인 외국인을 조회요청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한 채 국세청에 국세 체납정보 조회를 요청하여 국세 체납정보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각종 체류허가의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위 체류관리 지침과 다르게 최소 7개월에서 최대 36개월의 허가기간이 부여되었다.

[표 24] 국세를 체납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현황(2018~2020년 11월)

(단위: 건)

구분	계	체류허가 종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완전출국 후 재등록 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부여
체류허가 건수	2,151	1,769	170	212
체납정보 미확보에 따른 허가기간 제한 미준수	172	100	24	48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법무부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정보를 제공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업무 담당자가 체납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체납에 따른 강제처분이 유예된 경우 위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체류허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sup>71)</sup>하여 2018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1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 중이던 외국인이 신청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40건에 대해 위 체류관

71)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지침」에는 체납액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 제재대상임이 명시되어 있고, 강제처분이 유예되더라도 체납 사실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음

리 지침과 다르게 최소 7개월에서 최대 36개월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였다.

그 결과 위 40건과 [표 24]의 체납정보 미확보에 따른 허가기간 제한 미준수 172건을 포함하여 212건의 체류허가를 신청한 156명의 외국인은 계 67억여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도 체류허가 기간에 있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 체납된 국세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국세 체납정보 조회요청 대상자 명단 누락’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 국세청 시스템 과부하를 이유로 전체 외국인 명단을 연계하지 못하고 명단을 수시로 국세청에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2020년 12월 연계 프로그램을 긴급히 수정하여 오류를 시정하였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든 국세 체납 외국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최선이므로 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미제한’에 대해서는 체류허가 담당자가 국세 체납자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법무부장관은

①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지침」과 다르게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체류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체류허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②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 중 ‘국세 체납정보 조회요청 대상자 명단 누락’의 경우 2020년 12월 법무부가 국세 체납정보 조회요청 대상자 명단 추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성능을 개선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

## 2)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 등 처리 부적정

---

### 1. 업무 개요

국세청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경우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출국정지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재입국 시 입국 사실을 통보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재를 통해 체납된 세금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2020년 10월 말 현재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 중인 외국인 414명(총체납액 1,008억 원) 중 14명(체납액 85억 원)은 출국을 정지하고 있고, 이미 출국한 14명(체납액 80억 원)은 재입국 시 입국 사실 통보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 2. 관련 규정 등

「출입국관리법」 제4조와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와 제36조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 중인 외국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정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1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르면 [표 25]와 같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 외에도 ‘조세채권 확보 불가’와 ‘체납처분 회피 우려’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출국정지가 가능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출국정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표 25]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 기준

구분	출국정지 요청 기준
체납액	▪ 출국정지 요청일 현재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 중일 것
조세채권	▪ 압류·공매나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을 것
체납처분	▪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기타 요건	▪ 아래 6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국외이주(3년 이상 장기거주 포함), 2) 2년간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국외 송금, 3)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 발견, 4)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5) 최근 1년간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의 상태에서 사업, 질병 치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6)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제3자와 짜고 한 거짓 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진행 중

자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등 관련 법령 재구성

그리고 국세청의 「체납자 출국금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정지 요건이 충족되거나 출국정지 요청 전에 해당 외국인이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법무부에 입국 시 입국 사실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후 통보를 받는 즉시 출국정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고액 국세 체납 외국인의 출국정지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해당 외국인이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하도록 요청한 후 재입국 즉시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등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출국정지 대상자 자동 추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기능 미흡

국세청은 2016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표 25]의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요건 중 체납액과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이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가 조세채권 요건과 체납처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해 출국정지 요건 충족시 국세청을 거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세무서)은 2020년 10월 기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 중인 외국인 계 414명 중 80명은 [표 25]의 기타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해 관할 세무서가 조세채권 및 체납처분 요건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고, 334명은 기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해 조세채권 요건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출국정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국세 체납자 출국정지를 위한 [표 25]의 기타 요건 중 5)호를 표본으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운영 방식을 점검한 결과,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추출할 수 있으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는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그 결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기타 요건 미충족자로 분석한 위 334명의 국외 체류일수를 확인한 결과, 러시아 국적 T는 2015. 9. 30. 기준 국세 222,929천 원을 체납하고 2016년 196일, 2017년 215일, 2019년 230일 등 3년 동안 연간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을 초과하여 기타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기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1] “고액 국세 체납 외국인의 국외 체류일수 현황”과 같이 계 2,537,491천 원의 국세를 체납 중인 외국인 18명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년에서 4년 동안 연간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을 초과하였으나 국세 행정시스템에서 위 사람들을 기타 요건 미충족자로 분석함으로써 국세청은 위 사람들에게 대한 출국정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위 사람들을 출국정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나. 이미 출국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요청 누락

2020년 10월 말 기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표 25]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정지 요건 중 국세 체납액과 기타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한 외국인 80명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처리결과를 보면 31명은 조세채권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출국정지를 요청하지 않았고, 14명은 출국정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출국정지를 요청하였으며, 33명의 경우 출국정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나 해당 외국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여야 했다.<sup>72)</sup>

그런데 ㉠세무서는 2019. 6. 7. 이라크 국적 U가 111,065천 원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출국정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당시 국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지 않는 등 [표 26]과 같이 입국 시 통보 요청이 필요한 위 33명 중 14명에 대해서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고 19명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가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19명

72) 나머지 2명은 2020년 10월 말 기준 고액 체납자로 출국정지 요건 검토 등 처리 중

중 2018. 5. 14. 수단 국적 V가 2,291,862천 원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출국정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당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즉시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하지 않다가 감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0. 11. 3.에야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하는 등 7명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가 입국 시 통보를 누락하였다가 이번 감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하여 8개월에서 2년 6개월 동안 입국 시 통보 요청이 지연되었고, 나머지 12명은 2020년 10월 현재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

[표 26]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추출 자료 처리 현황(2020년 10월 말)

(단위: 명, 억 원)

구분	합계	출국정지 요건 미충족	출국정지 요건 충족					처리 중
			소계	국내 체류	해외 체류			
				출국정지 요청	입국사실 통보 요청	입국사실 통보 미요청	입국사실 통보 요청 지연	
인원수	80	31	47	14	14	12	7	2
채납액	691	146	541	85	80	326	50	4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U의 경우 2019. 6. 7. ㉠세무서가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지 않은 직후인 같은 해 7. 22. 입국하였다가 같은 해 8. 7. 출국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 4. 다시 입국하였다가 11. 11.에 다시 출국하는 등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다. 법무부가 통보한 고액 국세 체납자의 입국 정보를 미활용

법무부는 국세청이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한 국세 체납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에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입국 관련 정보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입국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통보받은 내용을 자동으로 인식한 후 해당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출국정지 요청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자의 고유식별번호(외국인등록번호<sup>73</sup>)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sup>74</sup> 입국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국 시 통보 제도를 운영 중이나, 국세청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통보받은 외국인 입국 정보가 인식되지 않도록 차세대 국세 행정시스템을 운영 중이었다.

그 결과 2020년 10월 말 현재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입국 시 통보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국세 체납 외국인 14명 중 682,620천 원을 체납 중인 미국 국적 W의 경우 법무부가 2018. 5. 28.부터 2019. 12. 21.까지 5회에 걸쳐 입국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알지 못해 국내 체류 중에 출국정지를 요청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13명의 경우에도 향후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법무부가 입국 사실을 통보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기관 의견** 국세청은 출국정지 대상자 자동 추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기능에 대해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한 전산 추출 시스템을 개선하여 출국정지 요건 해당자에 대해 빠짐없이 출국정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입국 시 통보 요청 누락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국 시 통보 요청을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입국 시 통보 대상

73)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게 생년월일 6자리와 고유식별번호 7자리 등 총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음

74) 내국인의 경우 여권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입국 공항을 관할하는 출입국 관서가 외교부의 여권 발급시스템을 통해 입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변경 시 외국인등록번호 추적이 어려움

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행정시스템에서 팝업창으로 후속 업무를 안내하는 등으로 위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은 입국 정보 미활용에 대해서는 W의 경우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2021년 1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하였고, 국세행정시스템이 외국인 여권 정보를 통해 법무부가 통보한 입국사실 통보자료를 인식하도록 개선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국세청장은**

①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출국정지 요건 검토 대상 외국인을 추출하면서 해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요청이 누락된 12명에 대하여는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세무관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②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 중 ‘입국정보 미활용’의 경우 국세청이 2021년 1월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은 입국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 다. 출국 외국인 등 보유 차량 관리 분야

### 실 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신차를 매입하거나 매매나 증여 등으로 중고 자동차를 양수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규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매매 등을 통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소위 대포차가 발생하였고, 대포차의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과속이나 신호위반 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일부는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 8. 11.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대포차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를 명령한 후 계속 운행 시에는 자동차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였고, 대포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대포차 단속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외국인의 경우 자동차등록 정보와 출입국 정보를 연계하여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계속 등록되어 있어 대포차일 가능성이 큰 차량의 명단을 추출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 제공하여 대포



차 단속에 활용토록 한다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정보연계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소재 불명 등으로 기소중지된 외국인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9월 말 현재 총 31,470명의 기소중지자 중 20.8%인 6,556명이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자로 나타나는 등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중 상당수가 대포차 상태로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정보연계 추진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외국인이 완전출국하거나 사망한 이후 소유권 이전등록이 신청되지 않은 자동차를 확인해 국내 법질서 준수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문 제 점

### 1) 완전출국 외국인 등 명의 차량에 대한 관리 부적정

#### 1. 업무 개요

각 시·군·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 운행자와 같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 외의 자<sup>75)</sup>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등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하면서 대포차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3항 및 국토교통부의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매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대포차 관련 정보(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량 체원 등)를 제공받은 후 해당 차량의 운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등 대포차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의 소유권 미이전

##### 가. 관계법령 등

75)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 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동차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아니고, 법인 소유 차량을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와 같이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위탁받은 사람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일정한 기간<sup>76)</sup> 내에 등록관청<sup>77)</sup>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매 등을 통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대포차가 발생하였고, 대포차의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강력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5. 8. 1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도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이를 위반한 대포차에 대해 경찰청이 단속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와 제81조가 개정되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sup>78)</sup>하는 내용의 처벌 조항도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대포차 여부 확인이 상대적으로 쉬운

76)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77) 「자동차관리법」 제8조와 제12조에는 시·도가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도의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음

78) 「자동차관리법」 제85조와 제86조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의 경우에는 벌금 대신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의2 위반의 경우는 형벌(징역형 또는 벌금형) 부과 대상임

외국인<sup>79)</sup>의 경우 자동차등록 정보와 출입국 정보를 연계하여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계속 등록되어 있어 대포차의 가능성이 큰 완전출국자, 체류기간 도과자나 폐업 사업자 소유의 자동차 현황을 추출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 제공하여 대포차 단속에 활용토록 한다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정보연계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정보연계 추진방안」 등에 따라 추출한 외국인 명의의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포차 단속업무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불법명의 자동차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정보연계 추진방안」을 수립한 이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2016년 1월 말부터 매월 등록 또는 신고된 외국인<sup>80)</sup> 중 차량 소유자 명단을 법무부에 제공한 후 해당 외국인의 출입국 및 사망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완전출국 또는 사망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외국인 명의 차량 관련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료의 활용 방식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2016. 8. 1. 대포차로 의심되는 외국인 명의 차량 207대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직권말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 2017. 2. 15. 그 결과를 제출<sup>81)</sup>

79)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의 일치 여부 확인이 어려우나, 외국인 명의 차량의 경우 소유자의 완전출국 또는 사망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 차량일 가능성이 큼

80) 외국인은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 시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등록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재외 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 대신 국내 거소를 신고할 수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81) 207대 중 169대는 대포차로 확인되어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38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가족이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받는 등 시범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한 이후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외국인 명의 차량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관리업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제공<sup>82)</sup>만 하고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보를 활용해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sup>83)</sup>이나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2020년 10월 말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207,931대<sup>84)</sup>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출국 및 사망 정보를 확인한 결과 [표 27]과 같이 완전출국자와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가 계 13,003대<sup>85)</sup>(외국인 명의 자동차의 6.3%)이며, 그중 79.5%인 10,338대는 소유자가 완전출국하거나 사망한 이후 1년 이상이 지나 상당수가 대포차로 추정되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외국인 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포차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표 27]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현황(2020년 10월 말)

(단위: 대)

구분	국내 미체류 사유 발생일 이후 경과 기간				계
	1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2,665	4,358	3,533	2,447	13,003
완전출국	2,620	4,282	3,498	2,425	12,825
사망	45	76	35	22	178

자료: 법무부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구성

8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행정지 자동차 검토 대상’ 항목을 통해 해당 자동차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임

83)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대포차 의심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명령 예정 사실을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소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고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국토교통부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매뉴얼」)

84) 2020년 10월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24,250,946대로서 외국인 명의 자동차의 비율은 0.85%임

85) 이는 감사원이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정보와 외국인 출입국 정보 등을 활용해 직접 분석한 것이며, 이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외국인의 완전출국 또는 사망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2021년 1월 말 현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운행정지 자동차 검토 대상’으로 관리 중인 대포차 의심 자동차는 16,688대임

한편 2020년 10월 말 현재 대포차로 의심되는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13,003대 중 73.2%인 9,518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하거나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표 28]과 같이 63.1%인 8,027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외국인의 완전출국 또는 사망 이후에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계 51,599건(1대당 평균 6.4건)의 범칙금 및 과태료 계 33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실제 소유자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 범질서를 위반한 채 운행되고 있었다.

[표 28]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의 과태료·범칙금 미납 현황(2020년 10월 말)

(단위: 대, 건, 천 원)

구분	미납 차량 대수	미납 건수	미납액
계	8,315(중복차량 제외 시 8,027)	51,599	3,340,579
과태료	7,902	51,082	3,317,989
범칙금	413	517	22,590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자동차세도 2020년 10월 말 현재 [표 29]와 같이 13,003대 중 75.7%인 9,874대의 체납 자동차세가 86억여 원으로 전체 외국인 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체납 중인 자동차세 125억여 원의 69.3%에 달하는 등 세금 납부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표 29]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 현황(2020년 10월 말)

(단위: 대, 천 원)

구분	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수	9,874	6,543	3,297	31	3
자동차세 체납액	8,667,921	2,795,947	5,637,460	195,807	38,707

자료: 17개 시·도 제출자료 재구성

### 3. 완전출국한 외국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자동차 등록

#### 가. 관계법령 등

「자동차관리법」 제9조와 제1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소유권 이전등록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시·도지사가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과 제94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sup>86)</sup>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동차가 등록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2020년 10월 말 현재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제2항”의 자동차 13,003대를 대상으로 등록 시기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인 12,908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외국인이 국내 체류 시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다가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인데 반해 [별표 2]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신규등록된 자동차 등 현황(2020년 10

86)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월 말)”과 같이 이미 완전출국한 외국인 76명의 명의로 95대의 자동차가 신규등록(9대)되거나 소유권 이전등록(86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95대 중 26대는 [표 30]과 같이 동일한 외국인 명의로 2대에서 8대의 자동차가 해당 외국인이 완전출국한 이후에 등록되는 등 동일한 외국인 명의로 2대 이상의 차량이 등록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표 30] 동일한 외국인 명의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등록된 현황(2020년 10월 말)

연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완전출국 일자	자동차 등록 내역
	성명	생년월일	국적		
1	X	-	카자흐스탄	2020. 1. 27.	▪ 2020. 1. 28~2. 3.에 ㄷ군에 5대, 2020. 2. 12.~2. 27.에 ㄹ시에 3대 등 총 8대 등록
2	Y	-	미국	2012. 7. 2.	▪ 2016. 2. 3. ㄱ시에 1대, 2016. 2. 22.~12. 19.에 ㄴ시에 4대 등 총 5대 등록
3	Z	-	카자흐스탄	2020. 2. 5.	▪ 2020. 7. 28.~7. 31.에 ㄱ시, ㄴ시, ㄹ시, ㅈ시에 각 1대씩 총 4대 등록
4	AA	-	우즈베키스탄	2019. 3. 13.	▪ 2020. 1. 7.~7. 6.에 ㅅ시, ㅋ차량등록사업소 동부분소 및 서부분소에 각 1대씩 총 3대 등록
5	AB	-	카자흐스탄	2020. 1. 15.	▪ 2020. 6. 12.~7. 10.에 ㅌ시와 ㅍ시(ㅎ구)에 각 1대씩 총 2대 등록
6	AC	-	우즈베키스탄	2020. 3. 8.	▪ 2020. 7. 30.~9. 29.에 ㄴ시에 2대 등록
7	AD	-	카자흐스탄	2019. 9. 4.	▪ 2019. 11. 18.~12. 20.에 ㅋ차량등록사업소 동부분소와 ㄴ시에 각 1대씩 총 2대 등록
계	7명	-	3개 국가	-	총 26대 등록

자료: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위 95대의 자동차 중 자동차등록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을 포함해 관련 서류가 남아 있는 68대<sup>87)</sup>를 확인한 결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등이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등<sup>88)</sup>을 제시하거나 외국인등록증 등의 사본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등의 조

87) 12대는 문서 보존기간(신규등록 5년, 이전등록 3년)이 경과해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았고, 15대는 자동차등록 신청서는 남아 있으나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

88) 65대 중 56대는 외국인등록증을, 9대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 차량을 등록하였음



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국토교통부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외국인 명의 자동차 13,003대의 경우 2021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요청”에 관련 사항을 별도 기재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요청한 후 실적을 제출받았으며, 앞으로 외국인 명의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명의 대포차 의심 차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등록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명의 대포차 의심 차량 중점단속을 위해 관련 명단을 추출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 운행 차량을 적발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적발 등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특히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 거소신고증을 도용하여 자동차를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의 경우 수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면밀히 수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포차로 의심되는 외국인 명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및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등의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②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포차로 의심되는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정보를 제공받고도 운행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고액 국세 체납 외국인의 국외 체류일수 현황**

(단위: 천 원, 일)

연번	성명(생년월일, 국적)	체납액	체납일	국외 체류일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T (-, 러시아)	222,929	'15. 9. 30.	196	215	113	230	170
2	- (-, 중국)	113,698	'16. 4. 26.	234	27	0	0	0
3	- (-, 대만)	111,026	'16. 8. 16.	270	443	253	0	0
4	- (-, 대만)	91,287	'16. 12. 31.	214	0	0	0	0
5	- (-, 중국)	116,182	'18. 1. 26.	0	167	42	272	8
6	- (-, 세르비아)	123,679	'16. 3. 17.	0	0	200	0	0
7	- (-, 캐나다)	93,022	'16. 7. 15.	70	67	223	43	0
8	- (-, 이라크)	74,458	'17. 12. 31.	0	434	136	254	164
9	- (-, 브라질)	63,141	'18. 10. 30.	0	0	589	0	0
10	- (-, 중국)	199,767	'16. 9. 20.	470	230	403	127	0
11	- (-, 중국)	92,831	'16. 6. 30.	102	974	0	0	0
12	- (-, 중국)	206,615	'13. 1. 11.	193	42	0	105	0
13	- (-, 방글라데시)	79,335	'14. 6. 30.	633	0	11	0	0
14	- (-, 이라크)	83,820	'16. 11. 5.	175	568	0	182	0
15	- (-, 브라질)	168,052	'18. 8. 31.	0	81	346	0	0
16	- (-, 브라질)	266,341	'18. 3. 14.	0	0	454	0	0
17	- (-, 대만)	352,142	'18. 7. 3.	0	0	535	0	0
18	- (-, 가나)	79,166	'16. 5. 28.	284	395	326	203	0
합계	18명	2,537,491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신규등록된 자동차 등 현황(2020년 10월 말)

연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완전출국 일자	등록 일자	차량 번호	등록관청	관련 서류 보관 여부	신분증 반납 여부
	성명(생년월일)	국적						
1	- (-)	중국	'19. 5. 28.	'20. 1. 14.	-	-	보관 (거소신고증 첨부)	미반납
2	- (-)	중국	'16. 12. 12.	'17. 8. 8.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3	- (-)	몽골	'18. 7. 9.	'18. 7. 16.	-	-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첨부)	미반납
4	- (-)	우즈베키스탄	'20. 1. 6.	'20. 5. 4.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5	- (-)	중국	'19. 7. 30.	'19. 11. 14.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반납
6	- (-)	팔레스타인	'19. 12. 28.	'20. 2. 12.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7	- (-)	중국	'17. 4. 20.	'17. 7. 5.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8	- (-)	중국	'19. 3. 16.	'19. 8. 1.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9	AB (-)	카자흐스탄	'20. 1. 15.	'20. 6. 12.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10	- (-)	파키스탄	'20. 1. 10.	'20. 5. 6.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11	- (-)	중국	'16. 11. 1.	'20. 6. 17.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12	- (-)	베트남	'20. 2. 29.	'20. 3. 24.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13	AB (-)	카자흐스탄	'20. 1. 15.	'20. 7. 10.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14	- (-)	중국	'19. 4. 22.	'19. 10. 8.	-	-	보관 (거소신고증 첨부)	미반납
15	- (-)	몽골	'16. 6. 14.	'20. 4. 13.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16	- (-)	중국	'19. 10. 27.	'20. 4. 10.	-	-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첨부)	반납
17	- (-)	카자흐스탄	'19. 6. 14.	'19. 8. 7.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연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완전출국 일자	등록 일자	차량 번호	등록관청	관련 서류 보관 여부	신분증 반납 여부
	성명(생년월일)	국적						
18	AD (-)	카자흐스탄	'19. 9. 4.	'19. 12. 20.	-	-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첨부)	미반납
19	- (-)	카자흐스탄	'19. 8. 2.	'19. 8. 27.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20	AC (-)	우즈베키스탄	'20. 3. 8.	'20. 9. 29.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21	AC (-)	우즈베키스탄	'20. 3. 8.	'20. 7. 30.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22	- (-)	카자흐스탄	'20. 2. 5.	'20. 7. 29.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23	- (-)	우즈베키스탄	'20. 12. 3.	'19. 1. 14.	-	-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첨부)	미반납
24	- (-)	베트남	'15. 12. 8.	'16. 6. 15.	-	-	미보관	미반납
25	- (-)	우즈베키스탄	'19. 12. 22.	'20. 9. 29.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26	- (-)	우즈베키스탄	'19. 12. 31.	'20. 1. 13.	-	-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첨부)	미반납
27	- (-)	우즈베키스탄	'20. 3. 3.	'20. 3. 9.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28	- (-)	카자흐스탄	'20. 8. 18.	'19. 12. 31.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29	Y (-)	미국	'12. 7. 2.	'16. 2. 3.	-	-	미보관	미반납
30	- (-)	베트남	'15. 2. 10.	'16. 2. 22.	-	-	미보관	미반납
31	- (-)	인도네시아	'11. 1. 14.	'11. 6. 10.	-	-	미보관	미반납
32	X (-)	카자흐스탄	'20. 1. 27.	'20. 2. 27.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33	X (-)	카자흐스탄	'20. 1. 27.	'20. 2. 24.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34	X (-)	카자흐스탄	'20. 1. 27.	'20. 2. 12.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35	Y (-)	미국	'12. 7. 2.	'16. 12. 19.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연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완전출국 일자	등록 일자	차량 번호	등록관청	관련 서류 보관 여부	신분증 반납 여부
	성명(생년월일)	국적						
36	Y (-)	미국	'12. 7. 2.	'16. 10. 25.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37	Y (-)	미국	'12. 7. 2.	'16. 10. 5.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38	Y (-)	미국	'12. 7. 2.	'16. 2. 22.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39	- (-)	러시아	'19. 8. 14.	'19. 10. 14.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40	- (-)	우즈베키스탄	'19. 10. 18.	'20. 6. 9.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41	AA (-)	우즈베키스탄	'19. 3. 13.	'20. 1. 7.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42	- (-)	우즈베키스탄	'19. 10. 15.	'20. 2. 12.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43	Z (-)	카자흐스탄	'20. 2. 5.	'20. 7. 31.	-	-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첨부)	미반납
44	- (-)	우즈베키스탄	'19. 1. 18.	'19. 3. 8.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45	- (-)	우즈베키스탄	'16. 6. 17.	'16. 9. 7.	-	-	미보관	미반납
46	X (-)	카자흐스탄	'20. 1. 27.	'20. 2. 3.	-	-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첨부)	미반납
47	X (-)	카자흐스탄	'20. 1. 27.	'20. 1. 31.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48	X (-)	카자흐스탄	'20. 1. 27.	'20. 1. 28.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49	X (-)	카자흐스탄	'20. 1. 27.	'20. 1. 28.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50	X (-)	카자흐스탄	'20. 1. 27.	'20. 1. 28.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51	- (-)	베트남	'18. 11. 24.	'20. 6. 19.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연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완전출국 일자	등록 일자	차량 번호	등록관청	관련 서류 보관 여부	신분증 반납 여부
	성명(생년월일)	국적						
52	- (-)	파키스탄	'15. 2. 11.	'15. 7. 14.	-	-	미보관	미반납
53	- (-)	카자흐스탄	'19. 12. 9.	'20. 5. 1.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54	- (-)	베트남	'18. 11. 28.	'19. 1. 3.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55	- (-)	중국	'19. 10. 10.	'20. 2. 28.	-	-	보관 (거소신고증 첨부)	미반납
56	- (-)	우즈베키스탄	'14. 3. 30.	'17. 1. 12.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57	AA (-)	우즈베키스탄	'19. 3. 13.	'20. 4. 22.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58	AD (-)	카자흐스탄	'19. 9. 4.	'19. 11. 18.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59	AA (-)	우즈베키스탄	'19. 3. 13.	'20. 7. 6.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60	- (-)	인도네시아	'20. 5. 10.	'20. 5. 12.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61	- (-)	인도	'20. 3. 5.	'20. 9. 29.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62	- (-)	우즈베키스탄	'20. 3. 1.	'20. 6. 19.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63	- (-)	중국	'17. 3. 3.	'17. 12. 22.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반납
64	- (-)	중국	'19. 7. 15.	'20. 5. 15.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반납
65	- (-)	우즈베키스탄	'19. 1. 20.	'19. 11. 4.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66	- (-)	미국	'19. 6. 9.	'20. 6. 2.	-	-	보관 (거소신고증 미첨부)	미반납

연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완전출국 일자	등록 일자	차량 번호	등록관청	관련 서류 보관 여부	신분증 반납 여부
	성명(생년월일)	국적						
67	- (-)	우즈베키스탄	'19. 12. 23.	'20. 3. 16.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68	- (-)	카자흐스탄	'20. 2. 5.	'20. 7. 29.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69	- (-)	우즈베키스탄	'13. 10. 1.	'17. 5. 4.	-	-	미보관	미반납
70	- (-)	파키스탄	'14. 4. 23.	'14. 8. 25.	-	-	미보관	미반납
71	- (-)	타이완	'19. 2. 18.	'19. 10. 4.	-	-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첨부)	미반납
72	- (-)	몽골	'20. 2. 19.	'20. 5. 7.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73	- (-)	카자흐스탄	'19. 12. 30.	'20. 1. 23.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74	- (-)	일본	'17. 10. 14.	'17. 10. 20.	-	-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첨부)	미반납
75	- (-)	호주	'19. 9. 26.	'19. 10. 24.	-	-	보관 (거소신고증 첨부)	미반납
76	- (-)	중국	'15. 3. 12.	'16. 11. 23.	-	-	미보관	반납
77	- (-)	중국	'16. 5. 10.	'16. 8. 1.	-	-	미보관	미반납
78	- (생년월일 미상)	파키스탄	'06. 10. 11.	'07. 4. 16.	-	-	미보관	미반납
79	- (-)	중국	'19. 12. 19.	'20. 3. 4.	-	-	보관 (거소신고증 첨부)	미반납
80	- (-)	미국	'15. 11. 22.	'15. 11. 30.	-	-	보관 (거소신고증 첨부)	미반납
81	- (-)	중국	'18. 6. 5.	'18. 7. 24.	-	-	보관 (거소신고증 첨부)	미반납
82	- (-)	파키스탄	'20. 1. 25.	'20. 2. 10.	-	-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첨부)	미반납
83	- (-)	필리핀	'14. 12. 22.	'16. 5. 25.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연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완전출국 일자	등록 일자	차량 번호	등록관청	관련 서류 보관 여부	신분증 반납 여부
	성명(생년월일)	국적						
84	- (-)	중국	'20. 1. 30.	'20. 8. 31.	-	-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첨부)	반납
85	- (-)	카자흐스탄	'20. 2. 5.	'20. 7. 28.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86	- (-)	중국	'19. 11. 14.	'20. 1. 6.	-	-	보관 (거소신고증 첨부)	미반납
87	- (-)	중국	'16. 7. 27.	'18. 3. 23.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88	- (-)	우즈베키스탄	'19. 6. 2.	'20. 1. 13.	-	-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첨부)	미반납
89	- (-)	카자흐스탄	'20. 2. 18.	'20. 5. 6.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90	- (-)	카자흐스탄	'20. 2. 12.	'20. 5. 6.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91	- (-)	우즈베키스탄	'18. 12. 22.	'19. 12. 20.	-	-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첨부)	미반납
92	- (-)	중국	'15. 7. 12.	'15. 7. 31.	-	-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첨부)	미반납
93	- (-)	우즈베키스탄	'12. 8. 26.	'14. 1. 16.	-	-	미보관	미반납
94	- (-)	미국	'18. 4. 14.	'20. 3. 31.	-	-	보관 (거소신고증 첨부)	미반납
95	- (-)	카자흐스탄	'20. 1. 1.	'20. 1. 21.	-	-	보관 (외국인등록증 첨부)	미반납
계	95명 (중복 제외 시 76명)	15개 국가	-	-	95대	53개 기관	-	-

주: 78번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 생년월일이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외국인이 출생일자를 모르거나  
종교상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것임  
자료: 법무부 및 각 시·도 제출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징 계 요 구

제 목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제재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출입국·외국인청  
조 치 기 관 법무부  
내 용

### 1. 사건 개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2018. 3. 15. 재외동포 자격(F-4)<sup>1)</sup>으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M이 폭행사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자 엄중경고한 후 같은 해 9. 28. 강제추행 2회 및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재불명으로 조사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10. 8. 위 사람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sup>2)</sup>하였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청은 2020. 2. 11. 체류기간 연장을 위 관서를 방문한 M에 대하여 출입국사범으로 조사하고 같은 해 2. 12. 위 사람에게 대해 30일 이내 출국명령과 함께 5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입국금지 조치를 하였다.

이후 위 관서는 2020. 2. 17. M이 용서를 빌며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요청하자 위 사람에게 대한 기존 출국명령과 함께 5년간 입국을 금지한 입국 규제

1) M은 2015. 2. 24. 단기방문 자격(C-3)으로 입국하여 같은 해 5. 18. 재외동포 자격(F-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재외동포 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0. 5. 8.이었음

2)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은 외국인의 범죄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소재불명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자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한 후 발견 시 조사를 거쳐 출국조치와 함께 입국금지 처분을 하고 있음

조치를 입국규제 대상자에 대한 체류허가인 엄중경고로 변경하는 한편, 같은 해 2. 19. 기존 입국금지가 잘못 입력되어 승인되었다는 사유로 위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법무부에 상신하여 같은 해 2. 28. 법무부로 하여금 위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sup>1)</sup>하도록 하였다.

## 2. 관계법령 등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제68조 등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강제퇴거 대상이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 및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 국내 체류가 가능한 일반범과 달리 성폭력범은 원칙적으로 출국조치를 하며, 5년 미만 징역(금고)을 받은 경우 일반범은 5년간 입국금지 대상이나 성폭력범은 10년간(재외동포는 5년간) 입국을 금지<sup>2)</sup>하도록 하는 등 성폭력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위 지침에 따르면 입국규제 대상자인 출입국사범<sup>3)</sup>이 ① 만 17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자 ② 국민의 배우자 ③ 무국적자인 사람(이하 “면제대상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입국금지 업무를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등에 따라 심사결정을 통한 입국금지 권한은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함.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경우에도 해제는 법무부(출입국심사과)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2)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는 1년, 성범죄는 5년간 입국금지

3) 입국금지 면제 요건 검토시, 출국조치를 받은 자가 출국 전이면 입국금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법무부 출입국심사과)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동안 입국규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해제를 검토(법무부 이민조사과)하고 있으며, 실무상 입국금지 면제 조치를 “특별해제”라고 표현

자”라 한다)으로서 국익<sup>4)</sup>이나 인도적 사유<sup>5)</sup>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등이 입국금지를 면제할 수 있고,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금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 등이 본부(출입국심사과)에 입국금지 면제를 상신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sup>6)</sup>, 사실 오인 등에 의해 입국금지 조치된 사람에 대하여도 청장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및 해제 상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 「사범과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사범인 입국규제 대상자에 대한 체류허가, 입국규제 면제 또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상신은 청장의 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여 국익이나 인도적 사유로 입국금지 면제 필요성이 인정되어 청장 결재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청장 결재로 본부에 상신하여 입국금지 면제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출국 및 입국금지 조치<sup>7)</sup>를 하여야 하고, 조치된 입국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면제요건 충족 등 입국금지 면제의 필요성 또는 사실 오인의 내용을 사실대로 적시하여 청장 결재를 받은 후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청장 결재 없이 임의로 체류허가를 하는 등으로 당초 처분 등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① 일정 조건의 외국인투자자(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 또는 외국법인의 파견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등) ②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5년 이상 사업 경영 ③ 전문지식,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산업 등의 종사자로서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④ 기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5) ① 국민·영주자격 소지자 등의 배우자 및 그 직계가족 ② 국내 출생자 등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자 ③ 국내 생활기반이 있는 외국국적동포 ④ 임신, 미성년 자녀 양육자로 국내 생활기반이 있는 자 ⑤ 만 17세 미만 또는 만 64세 이상자 ⑥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⑦ 산재 등으로 국내 치료가 필요한 자 ⑧ 소송 수행을 위해 국내 장기 체류가 필요한 자 ⑨ 기타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자  
 6) 입국금지 면제를 받았더라도 출국조치에 따라 일단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국내 체류가 가능하나 출국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이 도과하면 불법체류자로 관리됨  
 7)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강제퇴거 명령하지 않고 체류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단 출국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 중 국민의 배우자로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입국금지 면제조건에 해당할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하여 국내에 입국·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국금지 면제조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체류허가는 부당

### 3. 출입국 규제업무 관련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출입국·외국인청 ◎과 N은 2020. 1. 13.부터 2021. 1. 21. 현재까지, ㄹ출입국·외국인청 ㄷ국 ㄴ과장 P는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각각 ■출입국·외국인청 ◎과에서 출입국사범 심사업무 담당자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M에 대한 출국조치 및 입국금지 등 심사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였다.

#### 가. N의 경우

##### 1) 출국명령 후 청장 결재 없이 국내 체류를 허가

N은 ■출입국·외국인청 ◎과에서 2018. 9. 28. 2회의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M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같은 해 10. 8.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관리하고 있던 중인 2020. 2. 11.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위 관서를 방문한 M을 조사하여 이미 한 번의 엄중경고를 받은 사실(M은 2018. 3. 15.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금회에 한하여 엄중경고”하는 심사결정을 위 관서로부터 받음)이 있다는 점 및 미혼 중국인(만 24세)으로 입국금지 면제대상자가 아니며 출국조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도 없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5년)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20. 2. 12. 강제퇴거 대신 자진 출국을 하겠다는 M에 대하여 출국명령과 5년간 입국금지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사항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하 “ICRM”<sup>8)</sup>이라 한다)에 입력·저장하고 ICRM을 통해 “출입국사범 심사

8) Immigration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출입국심사, 체류외국인관리, 출입국사범관리 등 출입국 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

결정 통고서”(이하 “심사결정서”라 한다)를 출력하여 M의 확인·서명과 O의 검토를 거친 후 과장에게 결재 상신<sup>9)</sup>을 하여 과장 P로부터 최종 서면 결재를 받아 이견 심사결정을 완료하였으며, M에게 출국명령과 함께 5년간 입국금지를 조치하는 처분을 하였다.<sup>10)</sup>

또한 위 사람은 2020. 2. 12. M에 대한 5년간 입국금지(규제만료일 2025. 2. 11.)를 ICRM에 등재하기 위하여 같은 해 2. 13. O의 검토를 거친 “출입국사범 규제등재 심사결정서”에 대하여 과장 P의 전자 결재를 받아 M에 대한 입국금지 5년 조치가 ICRM에 등재되도록 하였다.<sup>11)</sup>

그런데 위 사람은 다음 날부터 M이 여러 차례 사무실로 찾아와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 5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M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확인서<sup>12)</sup>와 선처를 바라는 직장 동료 및 모친의 탄원서, 모친의 진단서<sup>13)</sup> 등 각종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비밀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20. 2. 17. M에 대하여 출국명령과 입국금지를 하는 기준 심사결정의 내용을 ICRM에서 삭제하고 대신 강제퇴거 대상에 대해 체류허가 하기 위하여 엄중경고만 하는 내용의 심사결정 내용을 입력·저장하고 심사결

---

9)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및 입국금지를 위한 심사결정시 전결권자는 사범과장이고, 과장에 대한 결재 요청 이전에 ◎과의 선임 직원인 O이 심사결정 내용의 적정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있음

10) 출국명령 조치는 N이 2020. 2. 12. 심사결정서 및 출국명령서에 M의 서명을 받고 출국명령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당시 심사결정서는 N이 당시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여 확인되지 않았고 과장 P는 입국규제 전 관련 내용을 심사결정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며, 법무부의 입국규제 해제 심사결정서에 규제 문서의 시행일이 2020. 2. 12.로 되어 있는 등 서면 결재가 그날 완료됨

11) 출입국 심사결정 내용을 ICRM에 입력한 후 저장하면 자동으로 입국규제 내용이 생성되며, ICRM에서 결재선을 따라 전자결재가 이루어지면 입국규제가 등재됨

12)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 건 산업재해 관련 자료는 2018. 12. 6.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계속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13) M 모친의 진단서는 ‘추간관 장애’가 있으나 특별한 합병증이나 발견되지 않은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모친 부양을 위해 M의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는 2020. 2. 17. M에 대한 출국명령을 체류허가로 변경한 다음 날(같은 해 2. 18.) 발급된 것임

정서를 출력하여 결재권자인 청장 대신 과장을 결재자로 기안하였으며, 이견 체류허가는 비위 정도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고 체류를 허가할 인도적 사유도 미약하다는 사유로 반대한 O<sup>14)</sup>을 설득하여 검토를 받은 후 M에 대해 기존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조치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 및 체류허가는 청장 결재사항이라는 점을 보고하지 않은 채 과장 P의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성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인 M이 출국조치<sup>15)</sup>되지 않은 채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으며, 2020. 3. 2.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체류기간을 1년 연장<sup>16)</sup>하는 허가를 받아 2021년 1월 말 현재에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 2)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여 입국금지를 해제

N은 2020. 2. 12.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M이 입국금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자 출국 후 5년간 입국금지하는 내용의 “중점관리대상자 등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 O의 검토 및 과장 P의 결재를 받아 M에 대해 2025. 2. 11.까지 5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M에게 입국금지 면제 사유가 있음에도 사실 오인 등의 사유로 입국금지 조치를 하였으나 입국금지 해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입국금지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및 「사범과 임전결규정」에 따라 청장<sup>17)</sup>의 결재를 거쳐 당초 시행한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처분

14) O는 이 건의 보조 검토자로서 심사결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심사결정은 주 검토자 책임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보조 검토자는 주검토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어서 주 검토자의 결정이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사결정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사범과 업무분장표」상에도 O는 N의 업무대행자로 기재되어 있음

15) 성폭행범은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출국조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됨(「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

16) 체류기간 만료일이 당초 2020. 5. 8.에서 2021. 5. 8.로 변경되었음

17) 금고 이상의 형사범 등 입국규제 대상자에 대한 체류허가는 청장 전결 사항(「사범과 위임전결규정」)

을 취소하는 한편 법무부(출입국심사과)로부터 입국금지 해제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20. 2. 17. M에 대하여 강제퇴거 명령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엄중경고만 하여 계속 국내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다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인 청장에게 결재를 상신하지 않고 과장 P의 결재만 받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20. 2. 19. 기존 심사결정이 완료된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고 M에 대하여 출국명령 및 입국규제(5년) 조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엄중경고로 심사결정되었고,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는 없었으며 ICRM의 입국규제는 오입력되어 승인된 것이라는 사유로 조치가 완료된 입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입국규제(1S) 해제 상신” 문서를 작성하여 청장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과장 전결사항으로 기안하여 과장 P의 결재를 받아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법무부 ☎과 담당자인 Q와 R이 담당자의 실수로 입국규제를 상신하여도 과장 승인이 있으면 입국규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로 “입국규제가 오입력된 후 승인되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여러 차례 전화로 그 의미를 문의하자 당초 출국명령과 입국금지를 하는 심사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숨긴 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ICRM에 잘못 입력되어 입국규제 등재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법무부 담당자들이 ICRM을 통해 M에 대한 심사결정 이력을 조회하였으나, N이 2020. 2. 17. ICRM에 입력·저장된 1차 심사결정사항(출국명령 및 5



년간 입국금지)을 삭제하고 2차 심사결정사항(엄중경고)만 입력·저장하여 당초 출국명령이 체류허가로 변경된 사실 및 입국규제가 O의 검토와 과장 P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 결과 법무부는 2020. 2. 28. M에 대한 입국금지 5년이 ICRM에 잘못 입력된 것으로 판단하여<sup>18)</sup> 청장의 결재 없이 □출입국·외국인청이 요청한 입국금지 해제를 승인함으로써 M에 대한 입국금지가 부당하게 해제되었다.

## 나. P의 경우

### 1) 출국명령 후 청장 결재 없이 국내 체류를 허가

P는 □출입국·외국인청 ◎과 과장으로서 2020. 2. 12. M에 대해 출국명령과 함께 5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심사결정서를 결재<sup>19)</sup>한 바 있고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은 같은 해 2. 17. M에 대해 체류허가를 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서가 상신되었으므로 위 심사결정서는 당초 처분을 변경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대 법 위반자<sup>20)</sup>는 입국금지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출국 및 5년 동안 입국금지 조치 대상이며, 금고 이상 형사범인 입국규제 대상자에 대한 체류허가의 결재는 청장 결재사항이라는 관련 규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사람은 2020. 2. 17. N이 상신한 M에 대한 체류허가 관련 심사결

18) 법무부 담당자 Q는 M에 대한 출국명령이 체류허가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미흡한 M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19) 1차 심사결정서가 폐기된 상태이나 P는 입국규제 문서(출입국사범 규제등재 심사결정서)의 경우 법 위반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사결정서'에 결재한 후 그 내용을 참고해 입국규제 문서에 결재해 왔으며, 2020. 2. 13. 본인이 ICRM에서 M에 대한 입국규제 문서에 결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1차 심사결정서에 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음

20) 위 관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외국인 42명에 대해 사범처리하여 그중 32명은 출국조치하고 영주권자, 국민의 배우자 등 10명에 대해서는 체류허가 하는 등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체류허가는 매우 이례적임

정서를 결재할 때에는 설령 이미 출국 및 입국금지 조치된 자에 대한 변경처분이라는 점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M은 입국금지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국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결재권자인 청장의 결재를 받아 체류허가를 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N이 위 심사결정서의 결재를 상신하자 그대로 결재하여 이미 출국명령과 입국금지 조치가 완료된 M에 대하여 국내에 계속해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를 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3항 가. 1)”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여 입국금지를 해제

위 사람은 2020. 2. 12. M에 대해 출국명령과 함께 5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당초 심사결정서에 결재(서면)하고 같은 해 2. 13. 입국규제의 ICRM 등재를 결재(전자)하였으며, ICRM에 등재된 입국금지의 해제를 법무부 본부에 상신할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사람은 M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법무부에 상신하는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입국금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입국금지 해제 사유가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 결재권자가 맞는지를 검토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반려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20. 2. 17. N이 체류허가에 대한 결재권이 청장에게 있는 금고 이상의 형사범인 M에 대하여 엄중경고만 하여 체류허가를 하는 것으로 재작성한 2차 심사결정서의 결재를 상신하자 그대로 결재하였고, 같은 해 2. 19. 자신의 결재로 입국금지된 M에 대한 입국규제가 실수로 ICRM에 등재된 것

처럼 N이 기존 입국금지 조치의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입국 규제(1S) 해제 상신” 문서를 과장 전결사항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자 그대로 결재<sup>21)</sup>하였다.

그 결과 “3항 가. 2)”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 [ N의 주장 및 검토결과 ]

N은 첫째, 2020. 2. 12. ■출입국·외국인청이 출국명령 처분한 외국인 9명의 경우 ICRM 로그 자료를 조회한 결과 출국명령서 발급 기록이 있는 반면 M의 경우 발급 기록이 없어 출국명령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2020. 2. 12. 자 1차 심사결정은 내부적인 검토 단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둘째, 이 건이 잘못 처리되었음을 인정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 ◎과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잘못 처리했고, 이 건 이외에 출입국사범 처리업무를 부당하게 한 건은 없다고 진술한다.

셋째, 2012. 2. 12. M에 대한 입국금지는 내부적인 의사검토 단계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부주의로 ICRM에 입국금지가 상신·결재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나 자체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부에 입국금지 해제를 상신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여 입국금지를 해제한 것이

---

21) ■출입국·외국인청 ◎과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요청은 청장의 결재사항이나, N은 사범과장을 전결권자로 기재하여 결재를 요청하였고 P도 그대로 결재하였음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첫째 주장의 경우 M이 이 건 감사와 관련하여 위 관서에 제출한 2020. 12. 15. 자 탄원서에서 출국명령과 함께 입국금지 5년의 처분을 받은 사실 및 2021. 1. 21. 위 관서 AE와의 전화 통화에서 출국명령을 받고 제반 서류에 서명하였고 그 후 N에게 받은 서류를 되돌려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N도 2020. 12. 3. 제출한 처분경위서에서 최초에 M이 자진출석했을 때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출국명령하고 입국금지 5년을 규제하는 것으로 심사결정하였으나 M의 요청으로 당초 출국명령을 엄중경고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P도 입국규제에 대한 결재가 ICRM에서 이루어졌다면 M에 대해 출국명령과 함께 5년간 입국금지하는 내용의 당초 심사결정서에 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출국조치를 전제로 하는 입국규제 조치가 ICRM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ICRM 고도화 과정에서 2020. 1.월 이후 출입국심사, 사범 결정 등 위 관서의 업무분야와 관련한 로그 자료 등의 이관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M의 탄원서 내용 등으로 보아 출국명령서 출력의 로그 기록이 없다는 점만으로 당초의 심사결정이 출국조치에 이르지 않고 단순한 내부 검토 단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둘째 주장의 경우 N은 이 건 처리 전에 20여 건의 출입국사범 심사 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 사람이 20여 년간 출입국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외국인보호소 사범과 근무를 비롯하여 출입국사무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으며, M이 위 관서로부터 이미 엄중경고를 받은 점을 알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O가 이 건 체류허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묵살하였고 관련 문서 폐기 및 기존 출국명령을 체류허가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M에게 교부한 관련 서류 등을 다시 돌려받아 폐기하는 등으로 기존 M에 대한 출국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점에 비추어 단순 실수라는 취지의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셋째 주장의 경우 N도 감사원에 제출한 2021. 2. 23. 자 심사결정 경위서에서 전결권자인 P의 결재를 받아 M에 대하여 출국명령에 따라 5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입국규제 조치가 ICRM를 통하여 시행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M에 대한 출국명령 및 5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서가 2020. 2. 12. 출력되어 P의 서면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P의 진술 및 같은 해 2. 13. 자 입국규제 등재도 ◎과 선임 O의 검토를 거쳐 전결권자인 ◎과장 P의 결재를 받아 유효한 것이므로, M에 대한 2020. 2. 12. 자 입국금지 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산 오입력을 사유로 입국금지 해제를 법무부에 요청한 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P의 주장 및 검토결과 ]

P는 이 건의 경우 부정한 의혹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도 있다고 느끼나,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P는 2020. 2. 17. M에 대해 엄중경고함으로써 체류를 허가하는 것으로 변경한 심사결정 통고서에 결재한 것은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을 사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M이 5년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었

으며 동거가족이 있는 점, 둘째, 체류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M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출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경우 반사회적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국조치 처분을 하고 있는데 입국규제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유를 고려하여 체류를 허가하거나 단순히 장기체류 및 가족과의 동거를 사유로 체류를 허가할 수 없고<sup>22)</sup> 입국규제 대상자에 대한 체류허가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과장 전결로 결정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출국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 즉시 해야 하는 것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sup>23)</sup> 출국조치할 수 있어 적발 시 출국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형사범을 강제퇴거 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법무부장관은 출국조치 및 입국규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N, P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N: 정직, P: 경징계 이상)하시기를 바랍니다.(징계)

22) 2018~2019년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281명 중 251명에 대해 출국조치를 하였는데, 대부분 출국조치를 받은 이들도 동거가족이 있는 등 사유는 있었음. ■출입국·외국인청에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성범죄 여부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사범 41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4명(영주권자 2명, 국민의 배우자 2명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 4명)에 대해서만 체류허가

23) M이 2020. 3. 2. 체류연장 허가를 신청하자 출국조치하지 않고 2021. 5. 8.까지 체류기간을 다시 연장해주었음